

		월	간	<	교	정	>		
		논	문		모	집			

월간 <교정>에 게재할 교정 관련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논문 투고 방법

#### 논문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가능

####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로 원고 송부

✉ correct2023@naver.com


#### 논문 종류

학위 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 제출 시 이메일에 성명,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에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Vol.583. 2024. DECEMBER

  
법무부 교정본부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 교정 논문

교정기관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교정 리포트

가석방제도 개선을 위한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교정 판례

징벌처분 유형별 행정심판 재결 동향  
- 2024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중심으로

# 12

Vol.583. 2024. DECEMBER

 법무부 교정본부

## COVER STORY

12월 25일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며 종교와 관계없이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물과 파티의 날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월간<교정>은 교정 종사자 분들의 사랑과 나눔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 04 교정 이모저모

제1회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 개최

### 06 역사와 오늘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선도적 수용 모델  
경북북부제3교도소

### 12 교정의 공간

‘원팀 정신’으로 새 역사를 쓰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여성 수용자 수용TF

### 18 외부 칼럼

식을 줄 모르는 러닝 열풍



### 20 교정 포커스 ①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 40 교정 포커스 ②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최경찬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위

### 68 교정 논문

교정기관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이승욱 부산교도소 보안과 교사

### 94 교정 리포트

가석방제도 개선을 위한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문창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114 칼럼

교도관이 천사라고?  
현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118 교정 판례

징벌처분 유형별 행정심판 재결 동향  
- 2024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중심으로  
김소라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 134 교정 NEWS

### 145 모범 공무원

### 146 독자마당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4년 12월 16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http://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http://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 제1회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 개최

## 직무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기여

교도관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정공무원의 화합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가 지난 12월 6일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는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을 비롯해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목포교도소, 청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울산구치소 등 8개 팀이다. 교정본부장은 대회를 통해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 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평소 보유한 능력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향상시킨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의 역량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직무역량 경연대회의 종목은 체력 평가, 응급구조, 종합전술 총 3개로 구성되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체력을 평가하는 체력 평가는 턱걸이, 점프 스쿼트, 레그턱, 중량(더미) 릴레이 달리기 등의 종목으로 실시되었다. 응급 구조는 장비 착용, 화재 진압,

환자 구조, 환자 이송, 앰블런스 탑승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서 수용자와 직원을 구조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비상 상황 등 각종 우발 상황에 대한 종합상황을 평가하는 종합전술 종목은 장비 착용, 통로 개척, 사격 및 인질 구조, 보호장비 착용, 수색 및 구조로 진행되었다. 경연 종목에 대한 평가는 임무 완료 최소 소요 시간순으로 감점 요소 발생 시 페널티 시간을 부여했으며, 종목별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제1회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는 울산구치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지수 교위, 황정목 교위, 이정직 교사, 최갑우 교도가 최우수선수의 영광을 안았다. 준우승은 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와 원주교도소는 장려상,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청주교도소가 노력상을 받으며 대회의 막을 내렸다.



#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선도적 수용 모델

## 경북북부제3교도소

최근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 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여성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 여느 교도소와 달리 여성 수용자 비율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선도적 수용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폭행사과 예방의 날’ 운영이 대표적이다. 수용자 중에는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수용자, 타 수용자 폭행에 다소 취약한 소년 수용자 및 장애인 수용자가 존재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이러한 수용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용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동시에, 음성적 서열 문화와 잘못된 수용자 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주 1회 폭행사과 예방의 날을 시행함으로써 교정사과 예방에 힘쓴다.

아울러 건강한 수용 생활의 밑바탕인 의료 처우 향상을 위해 원격진료시스템을 활용한 각 진료과 상담 및 진료, 바깥 못지않은 진료시설에 외부 전문의를 초빙해 시행하는 치과 진료 등도 시행 중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지난 10월 ‘2024년 상반기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성공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직원 복지**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지난 반년간 새로운 형태로의 기능 전환을 완벽에 가깝게 준비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일터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이 각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청송군이 갖춘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가족 응원 프로그램 등도 개설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향상에도 일조한다.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작년 보안과 직원휴게실을 쾌적하게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소파 교체, 제빙기·커피머신·안마의자 등

**‘최초의 성비 균형 교도소’를 향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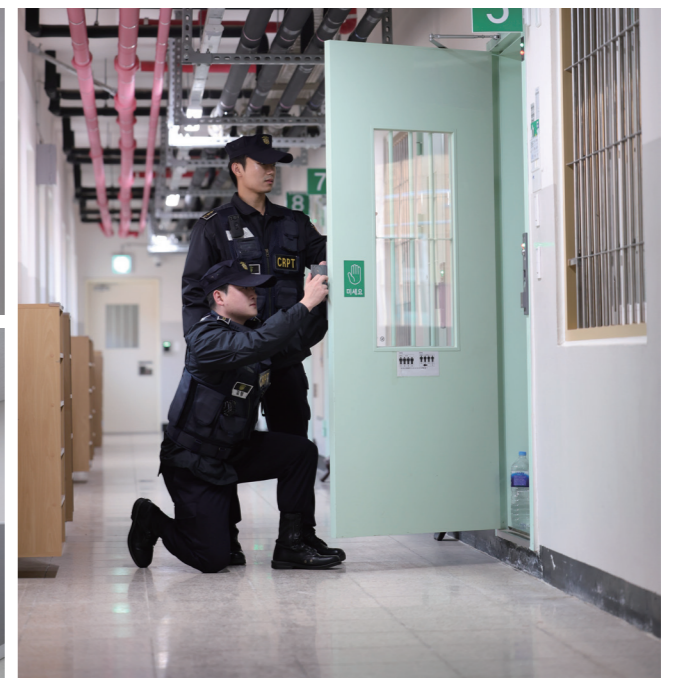
1981년 10월 청송제3보호감호소로 개칭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성 수용자만 수용해 온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내년 1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여성 수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성 수용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수용자 전용 수용시설이 남녀 수용자 수용시설로 바뀌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번 기능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다. 여자 수용자 수가 적고 관련 시설이 미미한 여느 교도소와 달리 여성 수용자 비율을 최대한 늘려 ‘성비가 균형을 이루는 최초의 교도소’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안청사를 중심으로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여성 수용자들이 지낼 수용동 리모델링에 착수해 12월 5일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후 수용 물품 및 여성 수용자 전용 직업 훈련장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본격 수용에 돌입할 계획이다.

**질서 확립과 세심한 처우로 보호하는 수용자 인권**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각종 사건, 사고와 수용자 간 인권 저해 행위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직원들은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 향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을 구비했다. 또한 야간 근무 상황대기실을 1인실로 구성하고, 내년 본격화될 여직원 전입에 대비해 상황대기실별 개별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직원 휴식 여건을 한층 개선했다. 또한 앞으로 여성 직원 비율이 1/3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 확충은 물론, 체력단련장 내 여성 직원을 위한 운동기구도 도입할 예정이다.

**남다른 개척정신으로 확립할 '튼튼한 균형미'**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포함해 청송군 내에 자리한 4개 교도소는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다. 그래서일까. 이곳 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는 편이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매년 지역 우수 학생에게 교정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위문금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청송군은 이 같은 상생 노력에 복지시설 확충으로 화답하려 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여성 수용자 수용을 위한 시설 개선에 돌입하자, 진보면 내에 여직원 대상 무상 임대 원룸, 키즈카페 등을 한데 모은 이른바 '교정 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경북북부제

3교도소도 여성 직원 10명 한지 특채를 진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사실상 하나의 교도소 안에 남성 교도소와 여성 교도소를 함께 운영하는 선도적 수용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있다. 오선호 소장과 전 직원은 한목소리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엔 만만치 않겠지만, 그 이상의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당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튼튼한 균형미를 갖추겠다"는 굳은 각오를 전했다.



# ‘원팀 정신’으로 새 역사를 쓰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여성 수용자 수용TF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성비 균형 교도소로 거듭날 예정인 가운데, 지난 6개월간 그 역사적 변화의 중심에서 활약한 조직이 있다. 남재현 팀장을 필두로 유관 부서 직원 10명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성공적 기능 전환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여성 수용자 수용TF가 그 주인공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최선의 수용 관리를 위한 다각적 협업**

여성수용TF는 7월 첫째 주부터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여성 수용자 수용에 관한 내용을 차근차근 구체화했다. 아울러 청주여자교도소, 거창구치소 등을 견학하며 여성 수용자의 수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여건에 걸맞게 개선 및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 수용동 리모델링 구조 확립과 공사 감독, 여성 직원 충원 계획 수립 등 이번 과업의 뿌리와 줄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무부터 수용 거실 벽지 종류와 색, 옷걸이 부착 위치 등 사소한 일까지 우리 TF를 거쳐 결정하고 시행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 매 회의의 주요 의제 논의는 물론,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옥석을 고르는 과정도 동시에 이뤄졌죠.”

여성수용TF는 각 의제와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에 반영하는 일도 등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 관련 논의 시에는 공사 담당자 및 외부 공사 책임자를, 여성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회복지과 직원을, 부인과 진료에 대한 내용은 의료과 직원을 회의에 초청해 각 분야별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을 속속 완성한 것이다.



**도전적 과업의 성공을 위한 특별 조직**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2024년 최대 화두는 단연 ‘기능 전환’이었다. 단순히 일부 수용동을 할애해 소수의 여성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40년 넘게 남성 수용자가 사용하던 수용동을 여성 수용자 수용동으로 재구성해 사실상 2개의 작은 교도소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수용 모델을 만들어야 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이번 기능 전환에 큰 힘을 쏟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성 수용자 수용TF(이하 여성수용TF)는 이토록 중요한 과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지난 7월 출범시킨 특별 조직이다. 복지과장인 남재현 팀장을 비롯해 여성 수용자 수용과 관련 있는 각 부서별 실무 직원 10명이 한데 모인 여성수용TF는 하반기부터 활동에 돌입, 지금껏 여성 수용자 수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 왔다. 각자의 고유 업무와 별개로 여성 수용자 수용에 관한 일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오히려 도전정신을 더욱 강하게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게 남재현 팀장의 이야기다.





### 여성 친화형 수용시설 및 복지시설을 마련하다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는 여성 수용동 내에서 여성수용TF가 가장 큰 공을 들인 공간은 목욕시설이다. 여성 수용자는 일어난 상태에서의 샤워를 선호하는 남성 수용자와 달리 앉아서 하는 목욕을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다수의 여성 수용자가 일반 목욕탕처럼 앉아서 씻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한편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의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남녀 수용동을 가로지르는 벽을 새로 설치하고, 접견실을 남녀 수용자 각각이 사용할 수 있도록 2개로 늘리는 등 단순 리모델링 이상의 공사도 추가적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수용 관리 편의성도 두루 고려했음은 물론이다.

그간 남성 수용자만 수용하다 보니, 올 상반기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는 남성 직원만 근무했다. 따라서 전 직원의 1/3을 차지하게 될 여성 직원 관련 복지 시설이 전무했는데, 이를 확충하기 위한 활동도 여성수용TF에서 담당하고 있다. 1인 상황대기실 개별 난방시설 설치, 체력단련장 내 여성 직원 선호 운동기구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 당분간 계속될 여성수용자수용TF의 활약상

11월 말 현재 여성 수용동 리모델링 공정률은 95%를 넘어섰다. 여성수용TF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 남재현 팀장은 “여성 수용동 준공 이후에도 여성 수용 물품 구입 및 비치, 미용 직업훈련장 설치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여성 직원 충원을 위한 방안도 여러 방면으로 모색 중인데, 최근에는 이 중 10명을 한지 특채로 충당하기 위한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 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12월에도 예정돼 있는 현안 외의 다양한 돌발 이슈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내년 1월 여성 수용자 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성수용TF의 활동은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성 수용자 관리 안정화를 위한 후속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조직이 바로 여성수용TF이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은 앞으로 또 어떤 활약상을 펼칠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 Interview 여성수용자수용 TF 남재현 팀장



#### “우리 TF의 여정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어느덧 TF 활동이 반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TF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교도소 전 직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여성 수용자 수용을 위한 제반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성 수용자를 수용 관리하며 나타날 다채로운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 역사의 새로운 막을 연다는 자부심으로, TF 해산이 선언되는 그날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합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 RUNNING

## 식을 줄 모르는 러닝 열풍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강 변이나 공원에서 달리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러닝 열풍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러닝 인구는 대략 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도대체 왜 러닝의 매력에 빠진 것일까?

글 송유진 문화칼럼니스트

###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는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청원생명살 대청호마라톤대회' 폴코스 완주에 성공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뉴욕 마라톤' 폴코스를 완주하며 명실공히 2030세대 러닝 열풍의 주역으로 인정받았다.

실제로 기안84의 영향력 때문일까.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러닝 열풍이 매우 뜨겁다. 혼자 달리는 러너도 많지만, 러닝 크루에 가입해 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해 자신의 러닝 기록을 인증하고 공유하는 행위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인

스타그램에 #러닝이라는 태그가 달린 게시글은 379만 개, #런스타그램은 127만 개, #러닝크루는 62만 개에 육박한다. 스포츠 패션업계에서는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러닝의 인기 요인으로는 골프나 테니스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골프와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 하고, 특정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러닝은 오직 운동복과 러닝화만 착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이다. 또한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비교적 가성비가 뛰어난 러닝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 러닝 열풍으로 인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요즘 2030세대가 러닝족으로 새롭게 유입되면서 과거와 다른 러닝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만족과 스스로 힐링에 집중하는 문화, 즉 '힐링 런'이 대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힐링 런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우선 러너의 증가로 인해 각종 러닝 행사의 티켓팅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졌고, 일상복과 러닝화를 다채롭게 매치하는 '러닝 코어(running+core)룩'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러닝 제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패션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3조 1,300억 원에서 2023년 4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러닝화 시장 규모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편집숍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러닝화 카테고리의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마라톤 등 러닝 행사가 많은 9월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가량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다. 백화점 3사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9월 러닝화 카테고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8%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스포츠 슈즈 매출도 각각 20%, 35.5% 올랐다. 이처럼 러닝족이 늘어나고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러닝화 시장은 점차 세분화 및 확장되는 추세다.

### 재미까지 행기는 이색 러닝의 등장

이처럼 러닝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기록에 상관없이 뛰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펀러닝(Fun-running)족'도 생겨났다. 펀러닝족에게는 극한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역시 신나는 '축제의 장'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펀러닝족들을 겨냥해 이색적인 콘셉트의 러닝 행사도 앞다투어 생겨나고 있다. 이색 러닝 대회는 특별한 경험을 중요시하고 즐거운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2030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기획소 1986프로덕션은 지난 9월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빵으로 채운 열량을 소모하자는 콘셉트의 '빵빵런'을 개최했다. 베이커리 브랜드 도제식빵과 함께 참가자 1인당 1개의 빵을 사단법인 '프렌즈'와 대전 지역 내 아동복지센터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한 기업과 브랜드에서는 이색 러닝 대회를 고객 마케팅 행사로 진화시키는 중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2024 장보기오픈런'을 개최했다. 장보기오픈런은 장보기와 러닝을 유쾌하게 결합한 이색 러닝 행사로 참가자들은 출발지에서 장바구니에 원하는 상품을 담고 5km를 완주하면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지자체도 이색 러닝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천구청에서 주최한 '금천구청장배 건강달리기 대회'는 참가비만 원에 사은품뿐 아니라, 5·10km를 뛰면 수육과 두부김치 등 풍성한 먹거리를 주는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정식 명칭보다 '수육런'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해졌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대회 접수 당일 접속자 폭주로 금천구청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2030세대는 기록이나 순위에 연연하는 대신 행사에서 제공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기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런 점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재미까지 챙길 수 있는 이색 러닝 대회는 앞으로 더욱 진화하고,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 목차

- I. 서론
- II. 외국인 수용자 일반론
- III. 외국인 수용자 처우 변화
- IV.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향
- V. 결론

## 국문요약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 주제어: 외국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처우, 외국인전담교도소, 외국인전문교도소, 국제수형자이송법

## I. 서론

### 1. 문제점

우리 나라 외국인 입국자는 2019년도 약 1,788만 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외국인 입국자는 약 266만 명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2021년도에는 그 수가 약 105만 명으로 더욱 줄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2022년도에는 약 34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외국인 입국자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22: 30).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교정통계연보, 2023: 83)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는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sup>1)</sup>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표 1>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총체류자	불법체류 외국인				불체율
		계	등록	단기	거소	
2018년	2,367,607	355,126	90,067	264,044	1,015	15.0%
2019년	2,524,656	390,281	95,815	293,150	1,316	15.5%
2020년	2,036,075	392,196	108,665	281,857	1,674	19.3%
2021년	1,956,781	388,700	125,022	262,251	1,427	19.9%
2022년	2,245,912	411,270	138,013	269,532	3,725	18.3%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2, 82, 재구성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의 과밀화 현상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외국인

1) 불법체류 자체로도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94조 7호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죄이고, 불법체류 그 자체보다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예비적인 단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교정본부는 불법체류 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소하는 자를 공안관련 사범으로 지정하고 담당 교도관으로 하여금 입소부터 구분수용 등 그 처우에 있어 특별히 더욱 신경을 쓰게 하고 있다.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 2. 선행연구의 분석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행형법의 시대에서 2007년에 전면 개정되고 2008년에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시대로 크게 변화하면서 학자와 실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류여해(2009), 허경미(2017), 김현중 외(2021) 등 다수의 논문에서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규정의 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위 규정은 형집행법의 등장과 함께 2008년 12월 22일에 폐지되었다. 다만 최근의 논문에서까지도 위 지침을 언급하는 것은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된 일관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 두 번째, 김진영(2011)의 논문 외 다수에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에 있던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을 폐지하면서, 특별히 외국인 수용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형집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지침에서 반영하였다. 그 외의 부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수용자처럼 빈틈없이 처우한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법무부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을 폐지하면서, 혹은 새로운 형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설명의 부족은 다수의 학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논문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수용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를 법률과 지침을 포함한 규정과 교정실무(법무부, 2023)를 포함한 교정현장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II. 외국인 수용자 일반론

### 1. 현황

#### 1) 국적별 현황

최근 10년간 외국인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1,222명에서 2022년 2,64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약간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수용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2017년에 1,33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뒤로 1,100명 내외로 유지 중이다. 한때 외국인 수용자 중 비중이 69%에 달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용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표 2〉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인원(2013년~2022년) (단위: 명)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합계	1,222 (100%)	1,271 (100%)	1,884 (100%)	1,997 (100%)	2,096 (100%)	2,079 (100%)	2,315 (100%)	2,451 (100%)	2,377 (100%)	2,644 (100%)
	수형자	773 (100%)	770 (100%)	1,123 (100%)	1,232 (100%)	1,320 (100%)	1,338 (100%)	1,416 (100%)	1,445 (100%)	1,386 (100%)	1,657 (100%)
	미결	449 (100%)	501 (100%)	761 (100%)	765 (100%)	776 (100%)	741 (100%)	899 (100%)	1,006 (100%)	991 (100%)	987 (100%)
중국	합계	757 (61.9%)	832 (65.5%)	1,300 (69.0)	1,329 (66.5%)	1,334 (63.6%)	1,148 (55.2%)	1,156 (49.9%)	1,132 (46.2%)	1,092 (45.9%)	1,168 (44.2%)
	수형자	488 (63.1%)	492 (63.9%)	800 (71.2%)	852 (69.2%)	903 (68.4%)	805 (60.2%)	730 (51.6%)	700 (48.4%)	628 (26.4%)	747 (28.2%)
	미결	269 (59.9%)	340 (67.9%)	500 (65.7%)	477 (62.4%)	431 (55.5%)	343 (46.3%)	426 (47.4%)	432 (42.9%)	464 (19.5%)	421 (16.0%)
러시아	합계	17 (1.4%)	17 (1.3%)	19 (1.0%)	32 (1.6%)	28 (1.3%)	37 (1.8%)	43 (1.9%)	67 (2.7%)	65 (2.7%)	73 (2.8%)
	수형자	11 (1.4%)	12 (1.6%)	14 (1.2%)	21 (1.7%)	19 (1.4%)	17 (1.3%)	20 (1.4%)	31 (2.1%)	34 (1.4%)	46 (1.7%)
	미결	6 (1.3%)	5 (1.0%)	5 (0.7%)	11 (1.4%)	9 (1.2%)	20 (2.7%)	23 (2.6%)	36 (3.6%)	31 (1.3%)	27 (1.0%)
베트남	합계	51 (4.2%)	50 (3.9%)	45 (2.4%)	63 (3.2%)	61 (2.9%)	62 (3.0%)	80 (3.5%)	145 (5.9%)	163 (6.9%)	263 (9.9%)
	수형자	29 (3.8%)	26 (3.4%)	30 (2.7%)	31 (2.5%)	35 (2.7%)	32 (2.4%)	36 (3.4%)	49 (3.4%)	77 (3.2%)	127 (4.8%)
	미결	22 (4.9%)	24 (4.8%)	15 (2.0%)	32 (4.2%)	26 (3.4%)	30 (4.0%)	44 (4.9%)	96 (9.5%)	86 (3.6%)	136 (5.1%)
태국	합계	21 (1.7%)	32 (2.5%)	39 (2.1%)	59 (3.0%)	112 (5.3%)	127 (6.1%)	190 (8.2%)	315 (12.9%)	398 (16.7%)	523 (19.8%)
	수형자	14 (1.8%)	16 (2.1%)	22 (2.0%)	34 (2.8%)	57 (4.3%)	71 (5.3%)	111 (7.8%)	139 (9.6%)	224 (9.4%)	340 (12.9%)
	미결	7 (1.6%)	16 (3.2%)	17 (2.2%)	25 (3.3%)	55 (7.1%)	56 (7.6%)	79 (8.8%)	176 (17.5%)	174 (7.3%)	183 (6.9%)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우즈베키스탄	합계	30 (2.5%)	38 (3.0%)	36 (1.9%)	51 (2.6%)	56 (2.7%)	49 (2.4%)	60 (2.6%)	100 (4.1%)	107 (4.5%)	116 (4.4%)
	수형자	18 (2.3%)	24 (3.1%)	19 (1.7%)	23 (1.9%)	34 (2.6%)	32 (2.4%)	32 (2.3%)	52 (3.6%)	54 (2.3%)	79 (3.0%)
	미결	12 (2.7%)	14 (2.08%)	17 (2.02%)	28 (3.7%)	22 (2.8%)	17 (2.3%)	28 (3.1%)	48 (4.8%)	53 (2.2%)	37 (1.4%)

자료: 교정통계연보, 2023, 83-85, 재구성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수용자는 절대적인 수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수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4.3배(17명→73명), 베트남은 5.2배(51명→263명), 태국은 25배(21명→523명), 우즈베키스탄은 3.9배(30명→116명) 증가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용자의 늘어난 수치인 2배를 상회한다. 특히 태국은 그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2) 성별 현황

2013년도에는 남성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가 90% 이상으로 차지하였지만, 2022년도에는 남성 수형자가 90.1%, 남성 미결수용자가 83%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도 여성 미결수용자가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여성 수형자 역시 미결수용자의 비율만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외국인 수용자 성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구분 연도	합계	수형자			미결수용자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13	1,222	773 (100%)	750 (97.0%)	23 (3.0%)	449 (100%)	421 (93.8%)	28 (6.2%)
2014	1,271	770 (100%)	734 (95.3%)	36 (4.7%)	501 (100%)	467 (93.2%)	34 (6.8%)
2015	1,884	1,123 (100%)	1,070 (95.3%)	53 (4.7%)	761 (100%)	692 (90.9%)	69 (9.1%)
2016	1,997	1,232 (100%)	1,173 (95.2%)	59 (4.8%)	765 (100%)	692 (90.5%)	93 (9.5%)
2017	2,096	1,320 (100%)	1,245 (94.3%)	75 (5.7%)	776 (100%)	683 (88.0%)	93 (12.0%)
2018	2,079	1,338 (100%)	1,224 (91.5%)	114 (8.5%)	741 (100%)	655 (88.4%)	86 (11.6%)
2019	2,315	1,416 (100%)	1,292 (91.2%)	124 (8.8%)	899 (100%)	799 (88.9%)	100 (11.1%)
2020	2,451	1,445 (100%)	1,331 (92.1%)	114 (7.9%)	1,006 (100%)	881 (87.6%)	125 (12.4%)
2021	2,377	1,386 (100%)	1,275 (92.0%)	111 (8.0%)	991 (100%)	852 (86.0%)	139 (14.0%)
2022	2,644	1,657 (100%)	1,493 (90.1%)	164 (9.9%)	987 (100%)	819 (83.0%)	168 (17.0%)

자료: 교정통계연보, 2023, 86, 재구성

### 3) 죄명별 현황

10년간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강도, 살인, 폭력·상해 등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외국인 수형자의 수가 2배 늘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등을 포함하는 사기·횡령은 3.3배(94명→307명), 마약류는 11.8배(52명→613명)로 크게 늘어났다. 국적별 외국인 수용자의 수의 순위가 중국, 태국이라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표 4〉 외국인 수형자 죄명별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구분 연도	계	절도	사기 횡령	강도	살인	폭력 상해	강간	마약류	기타
2013	773 (100%)	17 (2.2%)	94 (12.2%)	89 (11.5%)	224 (29.0%)	44 (5.7%)	63 (8.2%)	52 (6.7%)	190 (24.6%)
2014	770 (100%)	15 (1.9%)	95 (12.3%)	83 (10.8%)	223 (29.0%)	42 (5.5%)	69 (9.0%)	67 (8.7%)	176 (22.9%)
2015	1123 (100%)	24 (2.1%)	209 (18.6%)	82 (7.3%)	235 (20.9%)	61 (5.4%)	81 (7.2%)	117 (10.4%)	314 (28.0%)
2016	1232 (100%)	69 (5.6%)	203 (16.5%)	82 (7.3%)	248 (20.1%)	88 (7.1%)	101 (8.2%)	149 (12.1%)	292 (23.7%)
2017	1320 (100%)	85 (6.4%)	284 (21.5%)	77 (5.8%)	269 (20.4%)	66 (5.0%)	94 (7.1%)	115 (8.7%)	330 (25.0%)
2018	1338 (100%)	93 (7.0%)	384 (28.7%)	68 (5.1%)	229 (17.1%)	54 (4.0%)	101 (7.5%)	126 (9.4%)	283 (21.2%)
2019	1416 (100%)	136 (9.6%)	363 (25.6%)	74 (5.8%)	226 (16.0%)	57 (4.0%)	105 (7.4%)	222 (15.7%)	233 (16.5%)
2020	1445 (100%)	107 (7.4%)	333 (23.0%)	79 (5.2%)	243 (16.8%)	65 (4.5%)	112 (7.8%)	299 (20.7%)	207 (14.3%)
2021	1386 (100%)	55 (3.9%)	255 (18.4%)	94 (6.8%)	234 (16.9%)	55 (3.9%)	102 (7.4%)	425 (30.7%)	166 (12.0%)
2022	1657 (100%)	36 (2.2%)	307 (18.5%)	85 (5.1%)	223 (13.5%)	56 (3.4%)	132 (8.0%)	613 (37.0%)	205 (12.4%)

자료: 교정통계연보, 2023, 87, 재구성

## 2. 외국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는 처우 등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그 처우의 방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1)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 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2011.9.29.)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만은 그 주체가 되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 2) 수형자의 이중적 지위

여기서 ‘수용자’가 아닌 ‘수형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형집행법 제2조에서 수용자의 범위가 수형자를 포함하여 미결수용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는 기결수형자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까지 포함하는 ‘수용자’라는 용어보다는 ‘수형자’가 더욱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수형자는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의 대상이므로 교정시설의 운영이라는 본성으로부터의 제약이 가해지는 주체이나,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는 받지 않을 수 있는 주체로서 존재한다. 국가가 국민을 아무 제약 없이 다룰 수 있다는 특별권력관계이론 그 자체의 부당성은 고사하고라도 오늘날 수형자도 법치주의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허주욱, 2013: 103).

수형자를 단순히 교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또는 객체로 보고, 국가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제한을 할 때에도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37조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외국인 수용자의 지위

이제부터 이 논문에서는 ‘기결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을 것이다. 미결수용자는 재판과 관련된 부분만을 제외하면, 기결수형자와 같이 교정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고, 이 논문의 목적 역시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수용자는 외국인과 수용자로서의 지위 모두를 다 가진다. 따라서 수용자로서 형집행법에 따라 처우를 받게 되지만, 형집행법에 따른 처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여질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규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같은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할 것이다.

## 3.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한계와 문제점

### 1) 내재적 한계

1차적으로 드러나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한계는 언어·종교·식습관 등이다. 외국인 수용자의 특성이자 동시에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천안교도소 등과 같은 외국인 전담교도소<sup>2)</sup>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용자의 수가 많더라도 특성에 맞게 개별처우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각 교도소는 적게는 5명 이하 많게는 50명 이상의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물적·인적 여건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처우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 2) 정책적 한계

2차적인 문제는 판결 확정 후 외국인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관련된 것이다. 전국 각 소의 미결수용자의 신분인 외국인 수용자는 기결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교정, 교화를 하고 사회에 재복귀시킴에 있어 그 복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 의무)와 제86조(신병의 인도)에 의해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극소수의 외국인 수용자를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국에 출소와 동시에 인계 후 심사를 거쳐 강제추방 형태로 고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2) 여주교도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추가되어 천안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와 함께 4개의 교도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2024. 3. 18. 개정, 제83조 10호).

우리의 정서에 충실한 교정처우는 다양한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 교화에 심도깊은 역할을 다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황명호, 2008: 22). 그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에 천안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개청하고, 외국인 수형자들이 출소 후 자국으로 돌아가 취업할 수 있도록 최초로 배관, 이용, 원예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ytn, 2010.1.13.).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외국인만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국인과 같이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전담교도소 직업훈련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 8. 21. 기준으로 천안교도소 배관 공과 2명(대만, 몽골), 대전교도소 자동차코디네이터 공과 1명(중국), 여주교도소 양식조리 공과 1명(중국), 청주여자교도소 헤어 공과 1명(중국), 조리 공과 2명(중국, 태국) 등 7명이 직업훈련 중이다. 직업훈련과 같은 고차원적인 기술 습득보다는 단순 반복의 위탁작업 등에 우선권을 두고, 출입국관리법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sup>3)</sup> 등을 변형하여 최소한만을 제공하고 있다.

### 3)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현재 외국인 수용자가 없는 교정시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교정현장에서는 각 기관별로 새롭게 정리한 후 내부 결재의 형식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처우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겠다. 또한 내재적 한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담당 근무자 등이 그러한 외국인 수용자와 간단한 대화조차 가능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태국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특성을 배려한 개별적이고 세심한 처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책적 한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외국인 수용자의 형 확정 후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국인 수용자들의 프로그램과 대비하여 양과 질에서 모두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결국 외국인 수용자에게 의식주 해결이라는 최소한의 인권적 처우만을 제공하게 하고, 개별 처우와 같은 ‘인간다운’ 처우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3)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9조 1항).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III. 외국인 수용자 처우 변화

#### 1. 규정의 변화

##### 1) 국제규범의 흐름

외국인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이 있다.

유엔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을 1955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채택하였다. 유엔은 2015년 12월에 27년간 교도소 수용자로 탄압을 받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교도소인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015)을 인준하였다. 그 내용으로 통역요구권, 영사관 및 외교관 또는 지원기관과의 교통통신권, 성직자의 배치 및 면담권, 종교의식의 참여 및 교리서 지침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허경미, 2017: 96-97).

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Model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Foreign Prisoner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은 1985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마약범죄국(UNODC)은 외국인수형자이송표준을 더욱 정교하게 수정하여 2012년에 국제수형자이송지침(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 처우시설 지정의 배려, 자국민과의 차별 금지, 외국인 수용자의 입출소 조건의 차별금지, 통역 및 의사소통의 기회보장,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의 존중, 영사관과의 접촉 및 통신권 보장, 외국인 수용자의 고충처리 및 통역지원, 가족 및 지원기관과의 교통통신권 보장, 국가 간 가석방 등 양자 간 협약 촉구 등이 있다(허경미, 2017: 99-101).

##### 2) 국내규정의 변화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있었던 규정은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이었다. 2002년 5월 4일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8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집행법의 등장과 함께 2008년 12월 22일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수용자 처우는 위의 지침처럼 법무부예규에서 법의 위계 구조상 상위에 있는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며 그 중요성이 격상하게 되었다. 외국인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규정상의 변화는 <표 5>에 정리해 보았다.

<표 5>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의 현재 반영

조문	내용	현재현재 반영 규정 반영 규정
1	목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으로 이동
2	외국인 수용자의 범위 미결수용자, 수형자, 보호외국인 <sup>4)</sup>	보호외국인을 제외하고 형집행법 제2조에 수용자 등으로 규정
3	처우의 기본원칙 내국인 동등 처우 및 생활방식, 종교 등 특성 고려	형집행법 제5조에서 '출신국가·출신민족' 추가하여 외국인 차별 금지 형집행법 제54조 제3, 5항에서 언어, 생활문화 등 고려
4	외국인 수형자 전담소 지정 대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지정 외국인의 특성에 상응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시행	형집행법 제57조 제6항에서 전담교정시설 규정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로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
5	전담요원 지정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6조
6	독거수용을 원칙 예외적 혼거수용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7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
7	침대설치 등	특별한 규정 없음. 외국인 전담교도소 등에서도 외국인 수용자에게 별도로 침대를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관련 수용자에게는 침대 제공.
8	접견시 통역배치 한국어 사용 원칙,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 외국어 사용시 통역요원 배치	형집행법 시행령 제60조 한국어 사용 원칙,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 외국어 사용시 통역요원 배치할 수 있다.
9	주·부식 급여 이슬람교도에게는 돼지고기, 힌두교도에게는 소고기를 급여하지 않는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8조 수용자의 종교적인 신념 등 일반 급식이 곤란한 경우 필요한 음식물 지급을 수용자 급식관리지침(2024. 1. 3. 일부개정)에서 자세히 규정

4)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제1038호, 2022. 12. 5., 일부개정), 제2조)



조문	내용	현재현재 반영 규정 반영 규정
10	종교보호 성직자와의 접촉추선, 거실 내 예배 등	형집행법 제45조 종교행사 참여 및 개별적인 종교상담 등 내국인 과 동일하게 규정
11	외교관 등과의 면담추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입소 시 등 국적 대사관에 수용사실 통지 등
12	위독 또는 사망시의 조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
13	석방통보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
14	보호외국인의 처우원칙 및 입출소절차	외국인보호규칙에서 규정하여 외국인보호소 등 에서 처리
15	보호외국인의 고충처리	
16	보호외국인을 위한 수용시설의 대여	
17	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 특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적용
18	준용규정 이 지침 규정없을 때에는 행형법 등 적용	'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 등의 자국인과의 차별금지에 따라 형집행법 적용

## 2. 교정현장의 변화

### 1)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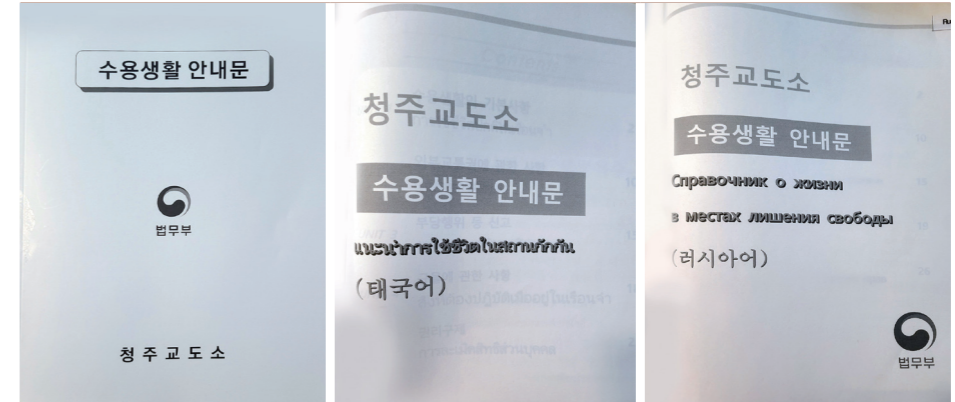
10년 전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용자는 1995년 182명에서 2000년 323명, 2005년 698명, 2010년 125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였고, 특히 중국인 수용자가 많이 늘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어 우수자 70명 등 경력채용을 실시하였다(서울신문, 2012.4.19.). 외국어 경력채용자들을 외국인 전담교도소 등에 배치하며, 규정에 맞게 외국인 수용자들을 처우하려고 노력하였다.

### 2) 현재

하지만 서두에서 본 것과 같이 외국인 수용자는 그 뒤 10년 동안에 또 2배 이상이 늘었다. 과거에 비하여 증가세는 둔화되었을지 몰라도, 현재 외국인 수용자의 절대적인 수는 수용 처우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의 외국인 전담교도소를 포함하여 서울지방 교정청 9개, 대전지방교정청 4개, 대구지방교정청 3개, 광주지방교정청 2개 등 총 18개의 외국인 수용자 처우 전담반을 가진 교도소들이 생겨났다. 각 교도소들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기본으로 외국인 수용자 인권 존중 및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용관리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세워 세심하게 외국인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표 6〉 외국어로 된 수용생활 안내문



※청주교도소는 8개 언어로 된 수용생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외국인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 시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담요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양한 언어로 된 신입 안내서 및 수용생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양한 통역서비스<sup>5)</sup>를 활용하여 외국인 수용자가 가장 힘들어할 시기인 입소시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 수용자 대부분은 불법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여 정상적인 건강관리를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은 거실 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원활한 외부교통권과 종교활동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 형성, 출소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등을 통하여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공을 들이고 있다.

5) 대표적으로 전화통역서비스가 있다. (법무부, 2023, 교정실무 1, 121)

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22:00에 이용가능하며, 지원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아랍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등 20개국 언어이다.  
 ② BBB 통역서비스(☎1588-5644) 사단법인 BBB Kore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지원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인도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등 19개국 언어이다.

### 3) 인권적인 처우를 위한 교정현장의 노력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된 규정들을 교정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교정기관의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통하여 외국인 수용자에게 인권적인 수용자 처우를 하고 있으며, 그 개선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과 관련하여 외국인 수용자 전화통화 확대 필요성을 검토(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385901, 2019. 10. 17. 의결)한 적이 있는데, 그 결정에서 “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 제99조는 미결수용자는 외부교통권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제한도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도 수용자가 외부사회와 상당 수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수용자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주어져야 하며, 교정당국은 외부사회와의 교통권을 권장해야 하고, 신빙성 있거나 제약받는 물적자원 등으로 인한 보안사항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가족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려운 수용자에 대해, 그 구체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들에 대한 방문접견과 전화소통에 대한 관련 규율의 적용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교정당국은 외국인 수용자의 고립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족·친구 등과의 소통을 포함, 외부사회와 관계유지 및 강화를 위한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적시하였다.



교정본부는 최근에 수형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늘렸고<sup>6)</sup>, 미결수용자 역시 월 2회 이내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sup>7)</sup>하였다. 외국인 수용자 역시 바뀐 규정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 IV.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향

### 1. 규정의 재정비

과거 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과 같이 외국인 수용자에 관한 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처럼 지침 수준의 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아니다. 지금은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재정비하여 형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 내용 역시 국제규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허경미(2017) 논문에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두고, 그 예하에 세부적으로 처우시설, 처우조건, 영사관 통보, 종교, 음식, 통역, 고충처리, 가족 면담, 지원기관과의 접견자유 등의 조항들을 두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적합한 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형집행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 수용자는 여성수용자, 노인수용자(65세 이상인 수용자, 형집행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소년수형자(19세 미만의 수형자, 형집행법 제11조 2호)이다. 그 규모로 봤을 때, 2022년 기준 여성수용자는 4,272명, 노인수용자는 3,709명, 외국인수용자는 2,644명, 소년수용자는 133명이다(교정통계연보, 2023). 가장 많은 수의 여성수용자의 경우에는 형집행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수용자는 시행규칙인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수용자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을 통해 전화횟수를 늘렸다.

개정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전	월 5회 이내	월 3회 이내	*월 2회 이내	*월 2회 이내
후	월 20회 이내	월 10회 이내	월 5회 이내	*월 2회 이내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7)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 2.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과 외국어 우수자 경력채용

현재 4개의 외국인 전담교도소가 있지만, 각 교도소는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국인 수용자 등도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외국인만을 위한 수용 처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전담교도소라고는 하지만 내국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등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시스템의 기준은 내국인 수용자일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을 외국인 수용자 등의 특성에 맞게 변형한 것이기에 외국인 전담교도소라 할지라도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4개의 외국인 전담교도소가 설립될 때, 외국인 수용자를 기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외국인 수형자만을 위한 ‘외국인 전문교도소’설립을 제안한다. 외국인 전문교도소는 오직 외국인 수형자만을 위한 교도소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외국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분포를 면밀히 살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수형자 거실, 종교 생활, 음식 등을 위하여 교도소를 건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권 국가의 외국인 수형자의 거실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교도소의 모습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적 여건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업훈련 등과 같은 교정행정 전반을 외국인 수형자만을 위해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교도소의 위치는 외국인보호소가 위치하는 청주와 화성으로 정하여, 석방 후 절차 등 유관기관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우수자 경력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다. 최근에 태국,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교정본부는 중국어 12명, 태국어 4명, 러시아어 3명, 아랍어 1명 등 20명을 외국어 우수자로서 경력채용<sup>9)</sup>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전문교도소가 설립되면 당연히 외국어 우수자를 경력채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각 교도소에는 특정 외국어(특히 태국어나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도관이 부족하므로 더 채용해야 할 것이다.

## 3.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를 비롯한 수용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약 3,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이데일리, 2023.8.31.). 외국인 수용자의 비용은 수형자의 언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영입 또는 필요시 통역 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식습관의 차이에 따른 개별 식사제공, 종교시설의 확충, 새로운 교정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평균 이상이 들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서두에서 밝혔던 외국인 수용자의 정책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수형생활 종료 후 그의 본국에서 사회로 복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수용자는 인권보호 및 교정효과 관점에서 언어의 장애 외에 가족으로부터의 면회도 어렵고 출소 후의 사회복귀에도 지장이 있다. 외국인은 언어와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복역 자체의 고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현대 행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의 실현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외국인 수형자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동료 수형자들로부터도 냉대를 받는 등 수형시설 내에서도 2류 수형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천진호, 2006: 109-113).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 인권적인 측면, 교정교화적 측면 등에서 외국인 수형자는 본국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수형자를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양 국간 조약이나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된 나라<sup>9)</sup>만이 국외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양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몽골·중국·베트남·인도·쿠웨이트·태국·홍콩·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인데(이데일리, 2019.3.21.),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처럼 외국인 수형자들의 국가와 양자 조약 체결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 유럽평의회 가입 및 양 국간의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외국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해야하고,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가 국외 이송에 동의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3조의 국외 이송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지라도 실제적인 이송 절차로 들어가면, 송환받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직접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외 이송 절차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수용자들은 그 절차 진행 중 출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24. 6. 1. 기준으로 천안교도소의 경우, 최근 10년간 국가간 수형자 이송자의 수는 22명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간 수형자 이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줄일 수 있도록 국내 규정을 수정하고 국가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9) 한국 정부는 2005.7.20. Europe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TS No.112)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 가입이 발효되는 2005.11.1.부터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현재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 등 54개 협약가입국과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제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The Council of Europe, 2024).

8)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3-43호)

## V. 결론

지금까지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수용자 관련 규정의 재정비는 2008년처럼 형집행법의 전면적인 제정과 같이 크게 규정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전문교도소의 설립은 외국인 수형자를 처우함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도소 설립도 설립 예정지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찬성 혹은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교정본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더 나아가서 국가적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그들이 자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간 수형자 이송은 우리나라의 정책만을 개선한다고 하여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간 혹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관련 연구 등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외국인 수용자 처우 등의 미흡으로 교정사고 및 외교적 분쟁이 없도록 외국인 수용자 처우 개선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경의성, 김동윤, 정상규 (2009)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 수용 만족도 조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Vol.- No.15
- 김진영, (2011), '외국인 수형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Vol.28 No.1
- 김현중, 현문정, 류다영, 정윤주, (2021), '외국인 수용자의 시설 내 처우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 천안 교도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Vol.- No.12
- 류여해, (2009),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 No.43
- 법무부, (2023), 공고 제2023-43호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_\_\_\_\_, (2023), 교정실무 I·II
- \_\_\_\_\_, (2023), 교정통계연보
- \_\_\_\_\_, (2022),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 천정환, (2013),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Vol.- No.29
- 천진호, (2006) '국가간 수형자 이송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 최 준, (2013), '외국인범죄와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과제',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Vol.- No.31
- 허경미, (2017),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 No.75
- 허주욱, (2013), 교정학 증보판, 박영사
- 황명호, (2008), '외국인 수용자의 한국교정기관 처우에 관한 연구 -대전교도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 기타자료

- 서울신문, 상반기 9급 교정직 경력경쟁 299명 채용...중국어 우수자 70명 선발 '역대 최대', 2012.4.19.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19024005/>
- 이데일리, 사형수가 '직접' 쓰는 비용은 얼마일까, 2023.8.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1926635712896/>
- 이데일리, 인권위 '외국인 장기 수형자, 본국 이송 위해 적극 조치 취해야', 2019.3.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60166622425616&mediaCodeNo=257&OutLnkChk=Y/>
- The Council of Europe, (2024),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Country information, <https://www.coe.int/en/web/transnational-criminal-justice-pcoc/transfer-of-sentenced-country-information/>, (검색일 : 2024. 8. 21).
- ytn, 천안교도소, 국내 첫 '외국인 수용자 직업훈련' 실시, 2010.1.13. <https://www.segye.com/newsView/20100113003537/>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최경찬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위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 과정)을 구성하고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및 마약재활 전공 교수 등의 TF 개발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최근 마약재활 연구 동향과 담당자 및 수용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160시간의 약 3개월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서울지역과 경상지역의 교도소에서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대상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샘플을 확대하고,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수용자, 마약사범, 프로그램 효과, 교정, 마약류

## I. 서론

과거 우리나라는 중독 문제를 정신건강 문제로 다루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기 보다는 처벌과 격리가 필요한 범죄자로 여겨 왔다(조중현, 손정락, 2013). 그러나 최근 여러 국가의 물질중독 연구에서 회복은 중독자 한 개인이 성장하여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김나미, 조현섭, 박경은, 2019; Dawson et al., 2005; Jacobson & Curtis, 2000). 미국의 정부 기관인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관리부(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22)는 회복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켜 가고, 자기 지시적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류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시점부터 형기를 마치는 시기까지 물질에서 차단된 채로 강제로 단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물질과의 단절 만으로는 중독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정의가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재발률을 나타내는 마약류 중독자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데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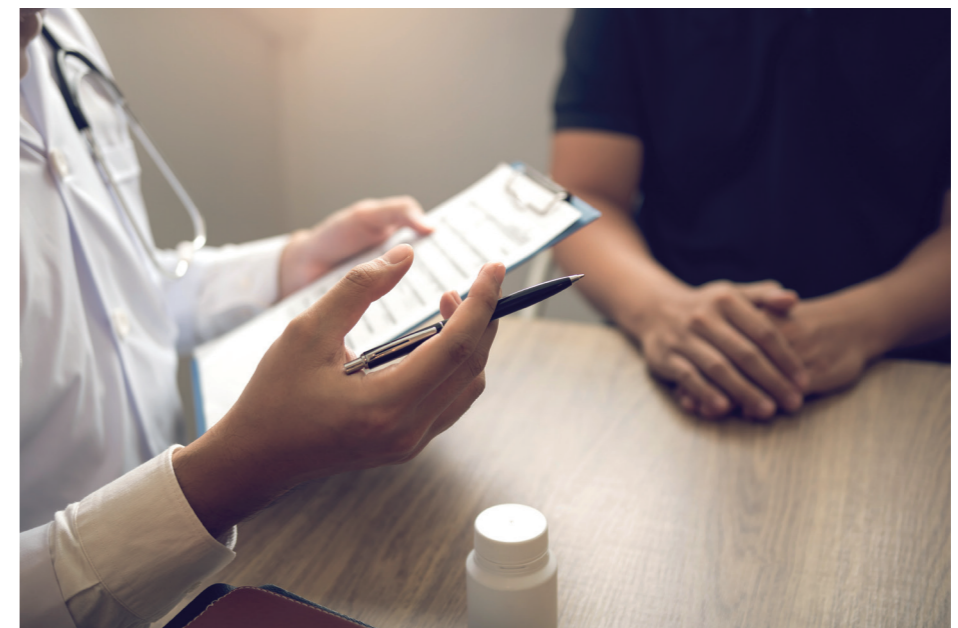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치료·재활의 성과는 저조하며 그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질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중독자의 90% 이상이 장기간 격리 이후에도 퇴원 이후 1년 이내 물질을 다시 사용할 정도로 재발률은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송진희, 서종건, 권혜진, 김용석, 2017), 물질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갈망과 금단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감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중독은 난치질환으로 발병과 회복에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Davidson & White, 2007). 회복이 한순간의 경험이 아닌 과정(process)(Deegan, 1998)이며, 심리·사회적인 안녕감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발달(강경림, 2019; Sullivan, 1994)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활 역시 단순히 물질사용을 중단하는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전 생애를 걸쳐 성장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고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난치질환인 중독의 회복과정을 상세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중독의 치료에는 회복자본 모델, 라이프스타일 균형 모델 등을 비롯해 자조모임 또는 치료공동체 모델의 접근방식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Leamy et al., (2011)은 중독재활 개입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97개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중독회복 과정을 5가지 주요 요인으로 요약하였다. 그들은 중독자들이 ‘연결’, ‘미래에 대한 희

망과 긍정’, ‘정체성’, ‘삶의 의미’, ‘능력 강화’라는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중독 물질과의 분리나 단약이 아닌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치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중독자가 단기적인 처치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치료재활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기에는 개인의 의지 뿐만 아니라 지지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중독의 회복적 관점의 변화 중 두드러진 핵심은 중독자들이 긴 시간의 여정을 거쳐 마침내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제거해주고 지지적인 환경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김나미, 조현섭, 박경은, 2019).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해독 치료가 끝나면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주고 퇴원 후 재발방지와 사회 재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관된 방침이다. 치료 프로그램은 병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중독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왜곡된 인지 수정을 도우며, 자존감 향상 등 회복의 탄력성을 향상시킨다(김정우 등, 2004). 알코올 등의 물질중독에 대한 치료는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적 치료로 나뉘며, 정신 사회적 치료 프로그램에는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 치료, 12단계 통합 회복프로그램, 증상이해 및 관리 교육, 대인관계 훈련, 자조모임, 스트레스 관리 훈련, 사회 기술 훈련 등의 여러 가지 치료 서비스가 있다(손조영, 2015).

중독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인지행동치료와 동기강화치료는 단기간의 치료기간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 방법이지만, 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빈번한 재발의 위기에 재노출되는 한계가 있다. 방법과 상관없이 어떤 치료 프로그램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유사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치료 재활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치료 형태 및 정신과 입원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잦은 재발과 일차원적인 접근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중독 치료 및 재활영역에서 만성적인 재발 문제는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김복희, 2010).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절충적이고 통합적인 시도가 있어왔다. Griffin-Shelley, Johnson, & Sandler가 1985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전인적인 치료를 강조하고 McLellan, Arndt, Metzger, Woody, & O'brien(1993)은 12단계 통합 회복 프로그램이 사회적 지지그룹이 있으면 6 ~ 30개월 이상 단주를 지속할 수 있다며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통합적 치료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Mancini(2003)는 중독자의 회복 경험에 대한 염두 없이 증상과 기능에만 집중을 둔 프로그램 서비스는 중독자인 소비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공적인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회복의 원칙과 전략의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독 치료에 있어서 한 가지 치료 모델의 단편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모델의 치료방법과 치료 기술을 통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여러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김영선, 2018; 강향숙, 2015).

최근 마약류 범죄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활용하여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자 우리 정부도 2022년 10월경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국내 유관부처를 총동원하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KBS NEWS, 2022).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으로 2021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11년 9,174명 대비 무려 80% 이상

증가하여, UN이 발표한 전 세계 증가세보다 약 3배 높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 특성상 숨겨진 범죄가 많아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 범죄 암수율을 약 10배로 간주하고 있지만, 2019년 국내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은 28.57배로 나타났다(박성수, 백민석, 2019). 2021년 단속된 마약사범 인원수에 동 연구의 암수율을 적용하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무려 46만명을 넘어서는 규모이고, 이는 국내 인구 100명 당 1명이 마약류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남용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20년 뒤에는 마약류 중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 인구 감소 및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홍경아, 2023).

이에 대통령의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관리 관련 종합대책 추진지시 이후 법무부에서도 집중수사, 단속과 치료재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23년 6월 법무부에서는 마약사범재활팀이 신설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과 함께 재범방지, 마약류중독 예방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통계연보(2023)에서 제시한 지난 10년간 마약류사범 수용현황을 보면 2013년 1,380명에서 2022년 2,169명으로 57% 폭증하였으나 마약류사범에 대한 적절한 재범방지 개입이 없이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서 재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2001년부터 법무부에서 마약류 중독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나 중독으로 인해 재발을 반복하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기본과정 등 프로그램 시간도 비교적 짧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무부는 2023년에 단약의지가 강하고 자발적인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여 동기강화상담, 치료공동체, 12단계촉진치료, 출소 후 연계, 자조모임 훈련, 특별활동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 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중독자가 회복을 잘 유지하고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독을 통합된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단순한 마약류물질과의 단절이 목표가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 기능이 회복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는 관점을 따른다면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자활의지를 위한 통합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현재 이와 관련된 개발과 연구가 미비,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재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해결과 전인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모델과 방법들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12단계촉진치료, 자조모임훈련, 직업재활 활동, 동기강화상담, 출소후 연계교육 등의 통합적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마약류 중독의 동기 강화 상담 개입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개입 방법으로 내담자의 변화 동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Miller & Rollnick, 2013). 마약류 범죄자의 경우 형사 사법 체계의 법의 집행의 강행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이수명령 제도라는 비자발적이고 동기가 떨어지는 강제성이 동반되어 있으며, 일시적 상담이나 집단 교육의 경우 낮은 수준의 치료적 효과성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황만성, 한동운, 2005) 하지만 동기강화상담은 내담자의 자율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기보다는 공감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Rollnick & Miller, 1995). 이 상담은 내담자가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Westra, 2012). 또한 내담자가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여 변화에 대한 자발적인 결정을 돕는다(Miller & Rollnick, 2013).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게 유용한데, 이는 중독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강한 저항과 부정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Burke, Arkowitz, & Menchola, 2003). 나아가 단기 상담 영역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Lundahl et al., 2010). 국내에서도 동기강화상담 기반 중독 행동 개입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리적 및 정서적 측면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하형미, 장수미, 2023).

### 2. 중독자 12단계 치료 프로그램

마약류 중독 사범들에게 실질적 회복을 돕도록 구성된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은 상호 지원적 접근법으로 영적인 각성을 통해 자신을 위한 초월하는 힘과 연결되도록 돕는다(Kurtz & White, 2015). 이러한 영적 요소는 중독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더 높은 힘을 찾아 자기효능감을 성장시켜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회복을 촉진 시킨다(Tonigan, Miller, & Schermer, 2002). 실제 미국의 형사 사법 체계과 스웨덴 전국 7개 마약 전담 교정시설에서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으로 12단계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본은 2003년부터 마약류사범을 치료 집단으로 편성하여 약물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12단계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강은영, 신성만, 홍민지, 2012). 이처럼 12단계를 적용한 자조 모임은 사회적 지지 자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Moos, 2008). 또한 12단계를 적용한 집단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를 통해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킨다(Humphreys, 2004). 12단계 프로그

램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변화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며 체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Hartney, 2011).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도록 도와 중독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Morgenstern & Longabaugh, 2000). 나아가 장기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참여를 강조하는데 중독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예방하고, 자기 성장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White, 2012).

### 3. 자조 모임(NA)

NA(Narcotics Anonymous) 자조 모임은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중요한 상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중독자에게 회복 과정 중 사회적 지지는 필수적으로 NA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공하면서 중독에서의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White, 2009). 한국은 마약류 중독자나 출소 한 마약사범의 경우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취약하다(고윤순, 2023). 미국의 경우 NA는 12단계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기성찰, 신앙 그리고 상호 지원을 강조하면서 중독자들이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Kelly & White, 2012). 이는 미국 전역에서 NA의 단약자조그룹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고 마약류 중독자가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으면서 믿음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다(고윤순, 2023) 또한 마약류 중독의 특성상 회복 여정이 쉽지 않아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로 구성된 자조 모임을 자원봉사자와 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Rief et al, 2014). NA 모임은 참가자들이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oos, 200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Bandura, 1997). 다른 면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은 사회에서 낙인효과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NA 모임은 비판 없는 환경을 제공하여 집단원들에게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낮춘다(Room, 2005). 자조 모임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데 NA 모임에서 '회복 중인 중독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고 강화하도록 도와준다(Cunningham et al., 2008). 이렇게 NA 모임은 중독자들이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한다(Laudet, 2008).

### 4. 특별활동

다양한 특별활동은 중독자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Csikszentmihalyi, 1990). 특별활동은 중독으로



인해 손상된 사회적 기술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한다(Putnam, 2000). 먼저 미술치료는 중독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아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Malchiodi, 2003). 미술치료는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감정이나 경험을 시각적 매체를 통해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이는 정서적 해방과 치유를 보여준다(Gantt & Tinnin, 2009). 국내 미술치료가 중독자와 그 가족의 분노 감소와 분노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김옥자, 2021). 또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치료에 있어서도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김지원, 변혁, 2024). 다음은 치유농업을 살펴보면 식물과 유기적인 작업 과정으로 중독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회복될 수 있다(Ulrich, 1984). 국내 원예 치료가 정신적 장애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문미영, 박천호, 장유진, 2010). 또한, 자아효능감과 스트레스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향희, 최봉실, 성지은, 2022).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원예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메타분석 결과가 있다(박동진, 2021). 또 다른 활동으로 직업재활을 들 수 있는데 진로적성 탐색을 하면서 중독자가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립심을 키우며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er, 1957). 이는 중독자가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Holland, 1997).

### 5. 출소 후 재활 시설 연계

불법 마약류 중독으로 출소 시에 사회적 지지와 재통합하는 사후 연계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한국은 출소 후 마약류 사범들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제한적이다(고윤순, 2023). 마약류 사범은 출소 후 중독재활기관 연계로 재범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독자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도록 큰 힘이 된다(Andrews & Bonta, 2010; 신연희, 2008). 또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때 출소 후 사회 적응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재범 예방에 중요한 요소이다(신연희, 2008). 치료와 재활 연속성의 중요한 역할은 중독 치료가 일회성이 아닌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출소 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지속적이어야 한다(McLellan, Lewis, O'Brien, & Kleber, 2000). 하지만 국내의 경우, 마약류 중독의 치료 및 재활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윤순, 2023). 출소 후에도 재활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는 중독자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다(박현나, 2022).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독자들은 재범률이 낮고 사회적 기능



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Prendergast, Podus, Chang, & Urada, 2002). 외국 재활 연계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박진실, 2017). 특히, 미국과 호주의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후 지역 재활 시설 연계는 재범 및 약물 재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박현나, 2022), 나아가 출소 후 중독자들이 재활 기관으로 유입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재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McCollister, French, & Fang, 2010). 재범을 줄이는 것은 교정시설의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상 및 법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Caulkins et al., 1997). 또한 중독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Bandura, 1997).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시범운영에 자원한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고 이전에 마약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0)

구분	분류	빈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별	남	20	30
	여	0	0
연령	20대	0	3
	30대	5	5
	40대	7	6
	50대	7	5
	60대 이상	1	1
학력	초졸	9	8
	중졸	4	2
	고졸	3	7
	대졸(2년제 이상)	4	3
범수	1범	5	8
	2범	8	5
	3범 이상	7	7
형기	1년 이하	2	2
	1년 ~ 2년	14	4
	2년 ~ 3년	4	6
	3년 ~ 4년	0	3
	4년 ~ 5년	0	3
5년 이상	0	2	
합계		20	20

## 2. 측정용 도구

### 1) 단약 자기효능감척도(Drug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DiClemente 등(1994)이 개발하고 김성재(1996)가 번역한 금주 자기효능 척도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SE)를 김용진(1998)이 변용 활용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하위요인은 1) 개인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부정적 정서, 2) 사회적 상황에서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약물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적/긍정적 상황, 3) 신체적 불편함이나 질병, 약물의 금단 증상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혹에 맞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감을 평가하는 신체적 및 기타 우려, 4) 금단증상이나 갈망상황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감을 평가하는 금단증상/유혹이며 총 20문항으로 '매우 자신없음' 1점에서 '대체로 자신없음' 2점, '보통 자신있음' 3점, '대체로 자신있음' 4점, '매우 자신있음'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20점

에서 최고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약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값은 .98이었다.

### 2)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 척도(K-SOCRATES-Drug)

Miller, Tonigan(1996)이 개발한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 열망 척도(SOCRATES: stage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를 신수경(2014)이 흡입제 의존자, 메스암페타민 의존자, 대마초 의존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 단계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동의함(5점)'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타당화 당시 전체 신뢰도는 .82였으며, 실제로 변화하려는 행동적 준비도와 열망을 측정하는 행동실천 요인은 .92, 개인이 자신의 물질 사용문제가 심각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식요인은 .86, 변화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양가감정요인은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다.

### 3) 회복단계척도(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URICA)

Prochaska와 DiClemente(1983)가 제안한 변화와 회복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McConaughy, Prochaska와 Velice(1983)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32문항 및 28, 24문항의 버전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4문항 버전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동의함(5점)'으로 측정되며 국내 타당화 과정을 통해 7점 이하는 자신의 약물사용과 행동에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전숙고, 8~11점은 자신의 약물사용이 문제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숙고, 12~14점은 변화를 준비하고 시도하는 준비 및 실행단계와 변화된 행동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유지단계로 평가한다(정여경, 최경찬, 이장한, 2024). 타당화 당시 전체 신뢰도는 .83, 전숙고 요인 .82, 숙고 요인 .79, 준비 및 실행 요인 .93, 유지 요인 .81로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값은 .74이었다.

### 4) 한국판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척도(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DASS)

1998년에 Antony 등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12개 문항 총 42개 문항을 개발하면서 전체 버전(42문항)과 단축형 버전(21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단축형 버전만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군 및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Herny & Crawford, 2005; Trauer 등, 2007;

Shea 등, 2009; Sinclair 등, 2012). 이후 21문항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2019년도에 이은현 등이 21문항과 단축형인 12문항에 대해 국내에서 타당화하여 그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국내 타당화 당시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21문항은 전체 .93(D: .84, A: .85, S: .90)으로 나타났고, 12문항의 신뢰도는 전체가 .90으로(D: .74, A: .78, S: .90) 나타냈다. 하위요인은 우울의 정도를 확인하는 우울(D), 불안의 정도를 확인하는 불안(A),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스트레스(S)이며, 채점은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별 문항을 합산하며 피검자들은 0점(전혀 해당되지 않음)에서 3점(거의 대부분 해당됨) 4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전체(21문항)는 0점에서 63점이며 단축형(12문항)은 0점에서 36점이다. 총점 및 하위 요인의 사후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값은 .96이었다.

### 3. 통합적 과정

####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투약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이 선고되고 이수명령을 병과받은 대상자들에게 교정시설 수용 중 또는 치료프로그램 참여 중에 약물 재사용 방지와 출소 후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에도 단약유지하여 사회내 성공적인 적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지속적인 단약과 회복의 유지는 단순히 변화동기가 높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중독원인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위해 개별 전문상담사를 배정하여 회복단계에 맞게 1:1 12단계촉진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난치질환으로 알려진 중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협심자들 또는 재활유관단체 등과의 접촉이 단약유지에 가장 중요한 점임을 인식하도록 별도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출소 후에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계망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 2) 프로그램의 시행절차 및 구성

##### (1) 프로그램 시행 절차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팀(중독전문가 등 5명, 교정시설 담당자 2명, 중독재활 관련 교수 2명)을 구성하였다. 교정기관 예비조사 및 문헌분석을 통해 8월경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완성하여 9월부터 두 곳의 교정시설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2)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중독재활에 효과적인 치료적개입 중 교정시설 내에 적용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출소 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치료재활체계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기강화상담, 12단계촉진상담, 자조모임 및 치료공동체, 특별활동, 12단계 집단교육, 사후연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접근과 집단접근을 포함하여 전체 시간은 160시간이다.

〈표 2〉 프로그램 구성 내용

구분	주요영역	내용
개인	동기강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상담사(중독심리사) 대상 안내 및 지침</li> <li>주요 기법 및 과정 포함</li> </ul>
	12단계촉진 개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개별상담을 통한 12단계 회복원리 적용(과제물, 단계별 양식지 활용)</li> </ul>
집단	기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li> <li>전체 운영시간 : 40시간</li> </ul>
	자조모임(NA) 및 치료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과정 특성을 고려한 치료공동체 실습</li> <li>마약재활거실 내 자조모임 별도 운영</li> </ul>
	12단계 집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단계의 핵심과 치료적 의미</li> <li>12단계촉진치료와 병행하여 운영</li> </ul>
	특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자 특성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활동</li> <li>추후 직업훈련 및 출소후 직업 연관성</li> </ul>
	사후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소 후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연계환경 조성</li> <li>각 지역별 연계망 정보제공 및 사전 신청</li> </ul>

#### 3) 프로그램 진행과정

본 프로그램의 진행자 중 1인은 중독재활 전문가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진행자 역시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상담관련 주요학회의 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 교정시설 심리치료팀에 소속되어 장기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과정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독재활 전문가 및 회복강사를 섭외하여 팀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참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 기관의 운영 기관과 방식을 동일하게 하되 특별활동은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에는 차이를 두었다. 12주간 프로그램은 평일 매일(주5일) 진행하고, 일과 이후에도 마약재활거실 자조모임과 개인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주간 시간표는 〈표 3〉과 같다.

〈표 3〉 마약사범 통합적 과정 시간표

구분	09:30 ~ 11:30	11:30 이후	13:30 ~ 15:30	17:00 이후
월	기본과정 (정규집단)	점심식사 및 과제	동기강화상담 (개인상담)	개인과제
화	12단계 과정 교육		12단계촉진상담(Ⅰ) (개인상담)	마약사범 재활거실모임
수	특별활동 (미술, 원예, 직업훈련)		12단계촉진상담(Ⅱ) (개인상담)	개인과제
목	자조모임 실습		12단계촉진상담(Ⅲ) (개인상담)	마약사범 재활거실모임
금	기본과정 (정규집단/ 사후연계 교육)		동기강화상담 (개인상담)	개인과제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기본과정 치료 프로그램은 사후 연계 교육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이수명령 집행 추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내 전문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마약류사범 중 이수명령 40시간 병과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크게 사전·사후 면담, 심리치료, 사전·사후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소 후 연계를 위한 외부 사회 재활 기관 소개 등 기관 담당자의 특장을 포함한 사후 연계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약물의 영향인식, 중독에 대한 이해, 재발분석 및 대처, 재발위험요인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재발방지와 이수명령 집행을 위해 개발된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기본과정)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세부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 운영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을 지원하고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빈도분석을 비롯한 전반적인 효과성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독립표본 t-검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공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측정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측정하였고, 각 변수가 프로그램 효과성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4. 연구절차

##### 1)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대상, 절차 및 평가도구 등은 대상자 연구동의 설명 이전에 중앙대학교 기관 생명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연구개발 TF 팀은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총 7차례의 공식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진행 방향은 문헌분석, 마약재활 관련 프로그램 효과성 파악, 개인별 세부 주제 지정, 자료 교차검토, 자문 등이었다. 시범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1차로 완성하였으며 12주(약 3개월) 동안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두 곳에 적용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과정 중과 종료 시기에 맞춰 담당 진행자 2인과 및 참여 수용자 8인을 면담한 결과와 진행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로 1회의 개발팀 회의를 통해 미비점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 2)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구성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수용자에게 심리검사와 면담을 실시한 후 담당자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예비 대상자에게는 진행될 연구의 목적, 장소(교정시설 내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실),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들이 본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구두로 안내하고 서면동의 과정에도 문구를 첨가하여 확인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발된 40명 중 형기종료일이 가까운 순서대로 우선 실험집단으로 배정하고 그 외의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에 배정하여 〈표 4〉와 같이 프로그램과 검사를 진행했다.

〈표 4〉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사전	처치	사후
실험집단(프로그램)	O1	X	O2
통제집단(무처치)	O3		O4

+ X : 통합적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 O1 : 실험집단 사전검사, O2 : 실험집단 사후검사  
 O3 : 통제집단 사전검사, O4 : 통제집단 사후검사

무처치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 검사만 진행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은 없었으며 연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통합과정 또는 기본과정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교정시설 통합적 프로그램은 교정보부 마약사범재활팀에서 발간한 ‘마약

류 회복이음' 과정 매뉴얼에 따라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교육, 상담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동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 범수, 재범위험성(REPI), 경비처우급에 대해서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이( $t = -1.760, p = .087$ ), 범수( $\chi^2 = 1.385, p = .500$ ), 재범위험성( $\chi^2 = 1.911, p = .591$ ), 경비처우급( $\chi^2 = 1.682, p = .64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동질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집단 별 나이, 범수, 형기 빈도 및 차이 검증(N=40)

변인		실험집단(N) M(SD)	통제집단(N) M(SD)	$\chi^2$ 또는 t
나이		47.20 (7.93)	41.85 (11.04)	-1.760
범수	초범	8	5	1.385
	재범	5	8	
	3범 이상	7	7	
재범위험성 (REPI)	REPI-2	1	1	1.911
	REPI-3	3	3	
	REPI-4	4	4	
	REPI-5	12	12	
경비처우급	S1	0	1	1.682
	S2	5	6	
	S3	13	10	
	S4	2	3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척도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점수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의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2.30에서 5.30이며 집단 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회복단계 역시 평균점수는 8.96에서 10.22이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단약 자기효능감( $t = 2.863, p <$

.01)과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SOCRATES-D)의 하위 요인 중에서 인식요인( $t = 2.112, p < .05$ )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변인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통제집단은 무작위 추출한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참여자 본인의 동의 및 신청에 의해 구성되어 본인이 시범운영에 참가하고 있다는 선발 동기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주요변인의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N=40)

변인	M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20)		t	p
		SD	M	SD	M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우울	4.70	4.42	3.10	3.54	1.265	.214
	불안	3.75	5.53	2.30	2.47	1.071	.291
	스트레스	5.30	4.78	4.40	3.27	.695	.491
회복단계		10.22	1.74	8.96	2.64	1.780	.080
단약 자기효능감		59.50	19.1	77.60	20.81	2.863	.007**
SOCRATES-D	행동실천	25.30	6.86	26.45	7.93	-4.90	.627
	인식	31.85	6.09	27.40	7.20	2.112	.041*
	양가감정	11.40	3.53	10.65	3.18	.706	.485

\*  $p < .05$ , \*\*  $p < .01$

###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사전검사 결과, 단약 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및 치료열망단계(SOCRATES-D)의 인식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여 집단 점수의 동질성이 온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설정한 후 공분산분석을(Analysis of Covariance)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SOCRATES-D의 회복실천, 인식 요인과 함께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회복단계, 단약 자기효능감 척도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OCRATES-D의 양가감정 요인은 유일하게 주효과 뿐 아니라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하여 프로그램 처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SOCRATES-D의 회복실천, 인식 요인 및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회복단계, 단약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공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분산원	SS	df	MS	F	
SOCRATES	회복실천	공변량	440.03	1	440.03	26,455***
		집단	722.62	1	722.62	16,135***
		오차	1009.07	37	27.27	
		수정합계	2089.10	39		
	인식	공변량	917.95	1	917.95	76,462***
		집단	186.73	1	186.73	15,554***
		오차	444.20	37	12.01	
		수정합계	1978.38	39		
	양가감정	공변량	4.417	1	4.42	.363
		집단	.054	1	.05	.004
		오차	450.13	37	12.17	
		수정합계	454.78	39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공변량	1640.66	1	1640.66	15,007***	
	집단	204.78	1	204.78	1,873***	
	오차	4045.10	37	109.33		
	수정합계	5470.98	39			
회복단계	공변량	80.49	1	80.49	47,067***	
	집단	61.27	1	61.87	1,873***	
	오차	63.27	37	1.71		
	수정합계	259.93	39			
단약 자기효능감	공변량	5549.30	1	5549.30	37,645***	
	집단	2445.19	1	2445.19	16,588***	
	오차	5454.20	37	147.41		
	수정합계	11400.40	39			

\*\*\* p < .001

종속변인들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SOCRATES-D의 회복실천 및 인식 요인, 회복단계, 단약 자기효능감이 사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적 정서에 있어 명목적 차이만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약물 사용에 대한 양가감정 혹은 자유가 박탈된 수형생활 중이라는 맥락적 요인이 우울·불안·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요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치료적 처치로 부적 정서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 사전·사후의 차이는 다소 작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8〉 실험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N=20)

구분	SOCRATES-D			우울, 불안, 스트레스	회복단계	단약 자기 효능감
	회복실천	인식	양가감정			
사전 M(SD)	25.30 (6.86)	31.85 (6.09)	11.40 (3.53)	13.75 (14.39)	10.21 (1.74)	59.50 (19.13)
사후 M(SD)	31.65 (3.33)	35.05 (5.43)	11.40 (3.95)	11.60 (11.95)	11.80 (1.66)	81.85 (12.13)
t	-3.78**	-3.20**	0.00	.66	-3.62**	-5.03***
p	.001	.009	1.000	.515	.002	.000

\*\* p < .01, \*\*\* p < .001

#### 4. 프로그램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은 나이, 범수, 재범예측지표(Recidivism Prediction Index:REPI), 교정시설 내 처우구분 등급인 경비처우급, 사전·사후차이, 집단구분(실험 및 통제집단 구분)이었다. 그 분석결과는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사후차이와 집단의 구분 외에는 변인 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N=40)

	변인	M	SD	1	2	3	4	5	6
1	사전·사후차이	0.52	1.84						
2	나이	44.53	9.87	-.03					
3	범수	3.68	3.82	-.01	.27				
4	REPI	4.18	.96	.14	.60	.01			
5	경비처우급	2.80	.69	.26	-.05	.01	.02		
6	집단구분	1.5	.51	-.59**	-.23	.33	-.17	.14	

\*\* p < .01

+ 사전·사후차이: 각 사전 및 사후 검사 차이의 절댓값

다음으로 집단구분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이가 마약사범들의 단약 자기효능감, 회복 가능성, 정서적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프로그램 외에도 이들의 중독 및 재활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나이, 범수, REPI, 경비처우급, 집단

구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 = 3.40, p < .05, \text{adj}R^2 = .31$ ), 집단구분( $\beta = .68, p < .05$ )이 유일하게 프로그램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변인들 중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구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집단구분에 따라 무처치한 통제집단과 달리 프로그램 처치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차이가 유의미했음을 보여준다.

<표 10> 측정 변인들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N=40)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p	VIF
효과성	(상수)	3.48	1.95		1.79	.083	
	나이	-.05	.03	-.24	1.33	.191	2.07
	범수	-.07	.07	-.15	-.99	.330	1.38
	REPI	.31	.39	.16	.78	.440	2.56
	경비처우급	.52	.44	.20	1.19	.243	1.67
	집단구분	-2.28	.48	-.68	-4.70	.01*	1.09

$F = 3.40(p < .05), R^2 = .28, \text{adj}R^2 = .31, \text{Durbin-Watson} = 1.83$

\* $p < .05$

## V. 논의

본 연구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마약사범의 중독재활을 위해 통합적(회복이음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담교정시설의 마약류 통합적 프로그램은 외부전문가 자문단(중독재활 관련 교수 2명)과 법무부 내부 전문가 그룹인 마약류 담당자,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 프로그램 담당자, 심리학 박사 등 총 9명의 개발팀이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적 프로그램 시범운영 후 결과분석으로 문제점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마약사범의 중독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의 회복이음 과정에 자원한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적 프로그램이 마약사범에게 미치는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지표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은 회복실천, 인식, 우울·불안·스트레스, 회복단계 및 단약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심리적 지표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과 처치 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회복실천, 인식, 회복단계, 단약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약사범들은 회복실천, 인식, 회복단계 및 단약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회복실천과 인식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는 중독의 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동기과 결심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마약류 중독자의 변화과정이 회복(SAMHSA, 2022)이기 때문에 마약류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천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본 통합적 프로그램이 마약사범의 출소 후 지속적인 회복행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감소는 중독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회복 단계와 단약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중독자가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 회복 과정에서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약류 통합적 프로그램은 동기강화 상담, 12단계 촉진 상담, 자조 모임, 특별 활동, 출소 후 직업 연계 활동 등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중독 회복 과정에서 단순히 약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중독자의 전 생애에 걸친 회복을 시작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기강화 상담은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중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이루기 위한 동기와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서 단약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은 동기강화 상담 개입이 단약 자기효능감을 증진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하형미, 장수미, 2023)를 지지한다. 이는 통합적 프로그램이 마약사범의 변화 동기를 이끌어내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독자 자신이 회복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단계 촉진 상담은 중독자들이 자신의 중독 성향을 깊이 탐구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복을 향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는 마약사범들이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중독 성향과 마약류 폐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자조 모임은 중독자들끼리 상호 지원과 격려를 통해 지속적인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NA와 같은 자조 모임을 통해 단약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자조 모임은 동료 중독자들이 서로를 지원하며,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특별 활동은 중독자들의 흥미와 취미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용 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소 후 직업 연계 활동은 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사후 연계 활동은 중독자가 교정시설을 떠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발 방지를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중독은 만성적인 재발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지와 회복 연계망 제공이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출소 후 자조 모임 참여와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중독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단약을 위해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은 중독자가 중독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독이 단기간의 치료로는 완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지지와 회복 연계망은 중독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의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 과정)이 효과적임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중독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중요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장애의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마약사범의 회복을 유지하고 사회적 복귀를 촉진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의 확대·적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이루어져 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기에 추후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여러 치료적 변인이 개입된 실험집단의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밝혀졌으므로 추후 각각의 치료적 변인들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다룰 수 있도록 질적 자료를 추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중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종단적으로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와 지속 가능한 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은영/신성만/홍민지. (2012).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12-AB-07

김나미/조현섭/박경은. (2019). 국외 중독회복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과정. 상담학연구, 20(4), 133-153.

김영선. (2018). 12단계 통합 회복 프로그램이 남성 알코올 중독자 회복과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복희. (2010). 「12단계촉진치료」가 알코올의존 회복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성재. (1996). 알코올리즘 환자가 음주-고위험 상황에서 사용한 대처방식과 우울과의 관계. 스트레스研究, 4(2), 79-88.

김용진. (1998).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성인알콜중독자의 사회심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우/송병준/신정호/최현숙/안규석/조관연/장승욱/채규만/김용석/김지은/권규영/엄태진/조성기/조현섭. (2004). 알코올백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서울.

김지원/변혁. (2024). 청소년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제 예술치료 적용을 위한 문헌연구. 트랜스, 16, 1-31.

고윤순. (2023). 한국의 마약중독 치료·재활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84, 1-27.

김향희/최봉실/성지은. (2022).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에게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31(2), 219-229.

대검찰청. (2022). 2021 마약류 범죄백서.

문미영/박천호/장유진. (2010).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분석. 화훼연구, 18(2), 136-141.

박동진. (2021).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대한메타분석. 상담심리교육복지, 8(6), 207-220

박성수. (2022). 마약류 중독예방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4), 71-100.

\_\_\_\_\_. 백민석. (2019). 마약류 범죄의 암수울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1), 151-170.

박진실. (2017). 마약류사범재범방지에 관한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9(3), 187-220.

박현나. (2022). 외국의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6(1), 1-27.

법무부. (2023). 2023 교정통계연보.

손조영. (2015). 알코올중독자의 AA(Alcoholics Anonymous) 모임 참여도에 따른 금주자기효능감 및 회복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진희/서중건/권혜진/김용석. (2017). 수감 중인 약물사용자의 약물재활교육 경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5-35.

신수경. (2014). 약물용 한국어판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973-985.

신연희. (2008). 출소 후 재범 예방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9(1), 191-213

신선희. (2022). 마약 중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9), 712-726.

조중현/손정락. (2013).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프로그램이 마약류 중독자의 우울, 충동성 및 단약자 기호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3-31.

양혜정. (2022).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6), 223-246.

장혜량, 서경선, 김나미. (2022). 마약중독회복요인에 대한 초이론적 모델의 유형 고찰 : 국내 질적 연구의 내용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3), 425-440.

정여경/최경찬/이장한. (2024).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타당화 연구. 교정연구, 34(1), 157-188.

최미경. (2023). 청년 마약중독자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5(3), 369-396.

홍경아. (2023). 마약류 중독 실태와 대응방안: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형미/장수미. (2023). 동기강화상담 기반 중독행동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20(1), 71-107.

황만성/한동운. (2005).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05-19-03

■ 외국문헌

Antony, M. M., Bieling, P. J., Cox, B. J., Enns, M. W., & Swinson, R. P. (199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42-item and 21-item versions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in clinical groups and a community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10(2), 176.

Andrews, D. A., & Bonta, J. (2010).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Routledge.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urke, B. L., Arkowitz, H., & Menchola, M. (2003). The efficacy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A meta-analysis of controlled clinical tria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5), 843-861.

Caulkins, J. P., Rydell, C. P., Schwabe, W. L., & Chiesa, J. (1997). Mandatory Minimum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Harper & Row.

Cunningham, J. A., Sobell, L. C., Sobell, M. B., & Gaskin, J. (2008). Alcohol and drug abusers' reasons for seeking treatment. Addictive Behaviors, 23(3), 421-423.

Davidson, L., & White, W. (2007). The concept of recovery as an organizing principle for integrating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s.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34(2), 109-120.

Dawson, S. A., Grant, B. F., Stinson, F. S., Chou, P. S., Huang, B., and Ruan, W. J. 2005. Recovery from DSM-IV alcohol dependent: United States, 2001-2002. Addiction, 100(3): 281-292.

Deegan, P. E. (1988). Recovery: The lived experience of rehabilitatio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1(4), 11-19.

DiClemente, C. C., Carbonari, J. P., Montgomery, R. P., & Hughes, S. O.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2), 141-148.

Drug Sentences: Throwing Away the Key or the Taxpayers' Money RAND Corporation.

Gantt, L., & Tinnin, L. W. (2009). Support for a neurobiological view of trauma with implications for art therapy. The Arts in Psychotherapy, 36(3), 148-153.

Hartney, E. (2011). Health psychology and behavior change: From science to practice. Wadsworth.

Henry, J., & Crawford, J.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verbal fluency deficits in schizophrenia relative to other neurocognitive deficits. Cognitive neuropsychiatry, 10(1), 1-33.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Humphreys, K. (2004). Circles of recovery: Self-help organizations for addi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obson, N., & Curtis, L. (2000). Recovery as Policy in Mental Health Services: Strategies Emerging from the State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23(4), 333-341.

KBS NEWS. (2022). "마약과의 전쟁"... 4개 검찰청에 특별수사팀 설치.

Kelly, J. F., & White, W. L. (2012). Addiction recovery manag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

Koob, G. F., & Le Moal, M. (2008). Addiction and the brain antireward syste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29-53.

- Kurtz, E., & White, W. (2015). Recovery spirituality. *Religions*, 6(1), 58-8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9092>
- Leamy, M., Bird, V., Le Boutillier, C., Williams, J., & Slade, M. (2011). Conceptual framework for personal recovery in mental health: systematic review and narrative synthesi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9(6), 445-452.
- Lundahl, B. W., Kunz, C., Brownell, C., Tollefson, D., & Burke, B. L. (2010). A meta-analysis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Twenty-five years of empirical studi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0(2), 137-160.
- Malchiodi, C. A. (2003). *Handbook of Art Therapy*. Guilford Press.
- Mancini, M. A. (2003). Theories of recovery elicited from individuals diagnosed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Doctoral dissertation.
- McLellan, Arndt, Metzger, Woody, O'brien (1993). The effects of psychosocial services in substance abuse treatment. *Addictions Nursing Network* 5(2): 38-47.
- McLellan, A. T., Lewis, D. C., O'Brien, C. P., & Kleber, H. D. (2000). Drug dependence, a chronic medical illness: implications for treatment, insurance, and outcomes evaluation. *JAMA*, 284(13), 1689-1695.
- McCollister, K. E., French, M. T., & Fang, H. (2010). The cost of crime to society: New crime-specific estimates for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08(1-2), 98-109.
- Moos, R. H. (2008). Active ingredients of substance use-focused self-help groups. *Addiction*, 103(3), 387-396.
- Morgenstern, J., & Longabaugh, R. (2000).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alcohol dependence. *The handbook of alcoholism treatment approaches*, 2, 123-137.
- Miller, W. R., & Rollnick, S. (2013). *Motivational interviewing: Helping people change* (3rd ed.). Guilford Press.
- Miller WR, Tonigan JS. Assessing drinker's motivation for change: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Psychol Addict Behav*. 1996;10:81-89.
- Nestler, E. J. (2001). Molecular neurobiology of addiction.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0(3), 01-217.
- Ng, F., Trauer, T., Dodd, S., Callaly, T., Campbell, S., & Berk, M. (2007). The validity of the 21-item versi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as a routine clinical outcome measure. *Acta neuropsychiatrica*, 19(5), 304-310.
- Prendergast, M. L., Podus, D., Chang, E., & Urada, D. (2002). The effectiveness of drug abuse treatment: A meta-analysis of comparison group studi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67(1), 53-72.
- Prochaska, J. O., DiClemente, C. C., & Norcross, J. C. (1992). In search of how people change: Applications to the addictive behaviors. *American Psychologist*, 47, 1102-1114.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Rief, S., Braude, L., Lyman, R., Dougherty, R. H. et al. (2014). Peer Recovery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Assessing the Evidence Psychiatric Services*, 65(7), 841-965.
- Rollnick, S., & Miller, W. R. (1995). What is motivational interviewing?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3(4), 325-334.
- Room, R. (2005). Stigma, social inequality and alcohol and drug use. *Drug and Alcohol Review*, 24(2), 143-155.
- SAMHSA (2022). SAMHSA's Working definition of Recovery, HHS Publication No.1-877-SAMHSA-7, Rockville, MD: SAMHSA.
- Shea, B. J., Hamel, C., Wells, G. A., Bouter, L. M., Kristjansson, E., Grimshaw, J., ... & Boers, M. (2009). AMSTAR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2(10), 1013-1020.
- Sinclair, S. J., Siefert, C. J., Slavin-Mulford, J. M., Stein, M. B., Renna, M., & Blais, M. A. (2012). Psychometric evaluation and normative data for the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cales-21 (DASS-21) in a nonclinical sample of US adults.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35(3), 259-279.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Harper & Brothers.
- Sullivan, W. P. (1994). A Long and Winding Road: The Process of Recovery from Severe Mental Illness. *Innovations & Research*, 3(3), 19-27.
- Tonigan, J. S., Miller, W. R., & Schermer, C. (2002). Atheists, agnostics and Alcoholics Anonymou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5), 534-541.
- Ulrich, R. S. (1984).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4647), 420-421.
- Volkow, N. D., Fowler, J. S., & Wang, G. J. (2003). The addicted human brain: Insights from imaging studies.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111(10), 1444-1451.
- Westra, H. A. (2012). Comparing the effects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n engagement and retention of alcohol-dependent client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43(4), 397-402.
- White, W. L. (2009). Peer-based addiction recovery support: History, theory, practice, and scientific evaluation. Great Lakes Addiction Technology Transfer Center.
- White, W. L. (2012). Recovery/remission from substance use disorders: An analysis of reported outcomes in 415 scientific reports, 1868-2011. Chicago, IL: Great Lakes Addiction Technology Transfer Center, Philadelphia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 Northeast Addiction Technology Transfer Center.

# 교정기관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이승욱  
부산교도소 보안과 교사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재 P교도소에 수용중인 성폭력 이수명령 대상자 24명 중 12명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12명은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집(SOTEST)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인지/태도, 자기관리문제, 대인관계, 성적 관심문제 영역에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 집단과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타인보고식 치료자 평가를 진행했으며 5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평가와 치료자의 타인보고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강간통념, 변화동기 등에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성적인 집착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대인관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탐색하고 성폭력사범대상 중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폭력관련 척도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치료자의 타인보고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는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수형자, 성폭력, 프로그램 효과, 교정, 범죄, sotest

## I. 서론

최근 발생하는 여러 강력 범죄 중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범죄 유형은 성폭력 범죄일 것이다. 대검찰청(2022)에서 발표한 최근 10년 동안 범죄 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를 살펴보면, 강력 범죄 중에서도 살인, 강도, 방화 범죄의 발생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율은 1.9배나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성범죄는 살인 다음으로 심각하게 여겨지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자살 시도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범죄의 발생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법무부, 2022). 성범죄는 왜곡된 성 통념, 사회·경제적 문제 등의 원인도 있어서 성범죄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강화에 국한하지 않고 치료·교육 정책의 강화와 성범죄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조주은, 2012).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과 함께 치료적 개입을 통한 교정 교화의 기회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윤정숙, 박정일, 여운철, 2011). 성범죄자들은 복역 후 결국 사회로 복귀하게 되며 이들 중 일부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성범죄자 치료는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다(Brown, 2005).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북미 및 유럽 등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초점도 성범죄의 재발 방지에 있다(Hall, 1995; Marshall & Laws, 2003). 따라서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 교화·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송원영, 2007).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수형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범위험 수준과 이수 명령 시간을 고려하여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기본과정(60시간)을 실시하고, 5개 심리치료과를 포함한 12개 교정기관에서 집중과정(100시간)을, 전국 5개 심리치료센터에서 심화 과정(300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하여 특별과정(150시간)을 시행하고 있고, 심화 과정 대상자들이 출소 전에 20시간의 유지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 수형자들의 재범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은 출소 후 재범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법무부, 2022). 성폭력사범 치료는 2003년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치료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1년 서울남부교도소에 심리치료센터를 개소한 이후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소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는 재범 연구를 통해 일부 확인된 바 있고(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성인 성폭력사범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기는

하였으나(윤정숙, 2019), 아직은 기초적인 분석 수준이다. 특히 최근 특정 성폭력사범의 출소 과정이 사회적으로 주목되며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유용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무부, 2022). 하지만 교정기관 내에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시행의 기간이 짧고 내부 전문가와 외부 자원의 부족으로 이수 명령 집행이라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치중하다 보니 과정별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당 연구들도 교정기관 수형자는 가장 취약한 연구 대상으로 연구 참여와 진행 절차에서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함에도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없이 진행되어 연구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 명령 시간이 40시간 이하이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재범위험이 낮은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평가척도(SOTEST)를 사용하여 1) 인지/태도 영역(여성 적대적인 태도, 폭력을 지지하는 신념, 반사회적 태도, 합리화), 2) 자기관리 문제(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충동성 및 자기 조절 실패), 3) 대인관계 영역(사회 정서적 기반 결핍, 고립과 외로움, 낮은 조망 수용 능력), 4) 성적 관심의 문제(일탈된 성적 관심, 성적 집착, 폭력과 성의 조건화), 5) 성범죄 심리치료 요인(건전한 가치, 삶의 목표, 치료동맹)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횟수,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REPI) 등급, 경비처우급, 자극추구성향등 개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치료프로그램과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보고식 평가와 치료자 평가를 교차검증하여 평가 결과를 보완하고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사범 기본교육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심리적 개입이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효과성을 확인하고 보완점을 찾아 추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참여자의 치료 효과척도(SOTEST)

점수에 유의한 변화와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에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실험집단과 무처치통제집단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폭력사범의 자기보고식 평가와 치료자의 관찰자 평가의 결과의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성폭력사범의 특징

#### 1) 인지 및 태도 영역

국내 성폭력 범죄는 살인 다음으로 심각한 고위험군 범죄다(박성훈, 김영규, 김한균, 박철현, 2014). 이런 성폭력 사범들은 다양한 문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성폭력사범의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먼저, 인지 및 태도 영역을 들 수 있다. 이 영역은 여성에 대한 적대감, 폭력을 지지하는 신념, 반사회적 태도, 성범죄에 대한 합리화 등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면서 성범죄자 치료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Ward et al. 2006).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다(Helmus, Hanson, Babchishin, & Mann 2013; Hanson, Mann & Thornton, 2010). 첫 번째 여성에 대한 적대감은 성범죄자의 경우 여성을 지배하고 해롭게 하려는 욕망과 함께 증오와 적대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왜곡된 신념이 강하다(Marolla & Scully, 1986). 이 왜곡된 신념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통해 지배하려 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폭력을 지지하는 신념은 성폭력사범이 여성이나 아동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낀다.’와 같은 인지적 오류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다(Holmes & Holmes, 2002).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관계를 거부하지 않은 아이는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Abel & Becker, 1984). 이처럼 힘이 약한 사람에게 폭력성과 공격성을 지지하는 성폭력사범의 왜곡된 신념이다(Burt, 1983). 세 번째 반사회적 태도 요인으로 복미의 경우 성폭력으로 기소된 남성의 29%가 반사회성과 충동성, 책임감 부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성격적 기질에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보고하고 있다(Abel, Huffman, Warberg, & Holland, 1998). 이는 반사회적 행동이 성폭력의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합리화 요인은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성폭력사범의 특징을 말한다(Marolla & Scully, 1986). 성폭력사범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Marshall, Serran, & O'Brien, 2009). 이는 성폭력사범이 아동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남성의 당연한 특권이라 생각 하는 왜곡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 2022). 이처럼 인지 및 태도 영역은 성폭력사범의 특징이면서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영역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2) 자기관리 문제영역

Thornton(2002)은 자기관리의 문제는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계획 능력, 문제해결 및 조절 능력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충동적 자기 조절의 문제는 성범죄를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강춘희, 권재환, 2021). 성폭력사범의 특징 중 자기관리 문제영역은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와 충동성 및 자기 조절 실패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는 성폭력사범들의 일상에서 어려움, 부정적인 정서, 대인관계에서의 마찰과 갈등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처전략 사용이 높다는 것이다(Kear-Colwell & Sawle, 2001, Neidigh & Tomiko, 1991). Whitaker et al., (2008)은 아동 성폭력사범은 일상의 삶에서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일반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사범의 부정적 감정의 어려움을 성적인 쾌락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거나 완화하려는 행위로 일탈 된 성적 공상을 하게 된다(Leitenberg & Henning, 1995).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마찰과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도 일탈 된 성적 공상과 자위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Giorgio-Miller, 2007). 이러한 부정적 일상과 감정, 대인관계의 대처 능력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을 미숙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관리 문제 조절 부족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충동성으로 인한 자기 조절 실패로 성폭력사범의 충동적 성격 특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Shelton et al, 1991; Kalichman, 1992). 국내에서도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통해 성폭력사범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 중 충동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지숙, 조성희, 최지명, 2009). 또한 충동성이 높은 성폭력사범의 경우 그렇지 않은 성폭력사범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재범률이 확인되었다(Prentky, Knight, Lee & Cerce, 1995). 이렇게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와 충동성 및 자기 조절 실패의 요인은 성폭력사범의 중요한 치료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 3) 대인관계 영역

성폭력사범의 또 다른 특징 중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의 결핍으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며, 사회적 지지 자원 또한 불충분해 소외감으로 이어진다(Cortoni, Heil, & Marshall, 1996). 초기의 성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회 기술이 부족하다는 전제로 이뤄졌다(Becker & Murphy, 1998). 하지만 최근 성폭력사범 연구를 보면 성범죄자는 친밀감, 애착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자신감, 외로움 등 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기술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Yates, 2003). 성폭력사범의 대인관계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 정서적 기반 결핍을 들 수 있는데 성폭력사범은 양육 발달 초기의 관계적 경험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Marshall, 2005). 생애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사회 기술 습득을 방해하여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정서적 결핍이 증가하고 이러한 문제는 일탈적 성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동기를 강화하게 된다(Ward, Hudson, Marshall, & Siegert, 1995). 다음은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예측을 위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성폭력사범이 다른 범죄유형 범죄자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 Bussière, 1996). 이 결과는 친밀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친밀감을 충족과 소외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성범죄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특징은 낮은 조망 수용 능력이다. 조망 수용 능력은 의사소통, 자기주장,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상태 인식과 표현 등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Fernandez et al., 1999). 이러한 낮은 조망 수용 능력이 사회 기술 능력의 부재로 이어져 성범죄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사회 기술 능력의 부족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 예측에 직·간접적인 요소이다.(DiTommaso et al., 2003; Segrin and Taylor, 2007). 따라서 치료적 개입에 있어 대인관계 영역의 개선은 매우 필요하다

### 4) 성적 관심의 문제영역과 자극 추구 성향

일탈 된 성적 행동은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으로 드러나며, 성적 관심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벗어난 성적인 선호가 잘못된 성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Lalumiere & Quinsey, 1994; McGuire, Carlisle, Young, 1965). 따라서 성폭력사범의 문제가 되는 성적 관심은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의 강도와 방향을 뜻한다(Harkins, & Beech, 2007). 더불어 성범죄의 재범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동적 요인으로 성적 일탈이 확인되었다(Hanson & Morton-Bourgon, 2004). 성적 관심 문제는 성도착, 성적 집착, 폭력과 성의 조건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성도착은 일탈 된 성적 관심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 전문가인 마셜(W. L. Marshall, 2005)이 성폭력사범의 성적 일탈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그들의 성적 일탈행동을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형사처벌이 아닌 심리 치료적 개입을 통해 근본적이고 올바른 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최광성, 변상해, 2020). 다음으로 성적 집착은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기능을 지배하는 성에 대한 강한 관심으로 설명한다(Thornton, 2016). 성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 성적 욕구를 시급하게 해소하려는 시도로 성의 대한 생각을 지속해서 하게 된다.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남성들은 많은 양의 성관계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비정상적 성적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폭력과 성의 조건화로 폭력성과 연합된 비정상적 성적 행동을 뜻한다(송원영 등 2021).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들은 폭력적인 음란물을 통해 성적 학대 환상을 가지며 자위행위를 통해 패턴을 강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가학적 환상으로 성적쾌감을 일으키게 된다(Stefanska, Higgs, Carter & Beech, 2017). 이처럼 비정상적 성적 관심을 가지는 성폭력 사범들은 높은

자극추구성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Zuckerma(1971)은 자극추구성향은 '법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위협을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면서 복잡하고 강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성폭력사범의 정서 자극 인식 실험연구에서 여성 성인 자극 사진과 여성 아동 자극 사진에 반응이 길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동 성폭력사범의 경우 성적 대상이 소아기호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성범죄자보다 자극추구성향이 높게 나왔다(이선영, 2012). 이는 성폭력사범들의 성적 대상이 다양할수록 자극추구 속성이 높다는 것이다(Ael & Wiegel, 2009). 이와 같은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성범죄자는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 문제로 일탈 된 성적 인식 및 집착과 함께 폭력을 동반한 성행동으로 이어져 반드시 개선을 위해 치료적 개입이 되어야 한다.

## 2. 치료적 요인

### 1) 개입 방법

1950년대 이전 비구조화된 정신분석적 접근을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일탈적인 성행동수정 중심의 혐오치료를 사용했던 행동주의적 접근을 거쳤다(이영아, 정보라, 2017) 이후 사회 기술 능력 및 대인관계 증진, 공감 능력향상, 인지적 오류수정, 자기 조절(Self-Regulation) 능력향상 등을 강조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모델로 변화해 왔다(Hudson, 2005). 2005년 이후에는 성폭력사범이 가지는 문제를 바탕으로,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이영아, 정보라, 2017). 즉,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는 대상자의 강점 개발 및 재발 방지(ReLapse Prevention) 모델, 위험성·욕구·반응성(Risk Need Responsivity, RNR)모델, 반구조화된 좋은 삶(good lives) 모델 등 긍정심리학적 접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Andrew & Bonta, 1998, Ward & Stewart, 2003, Marshall et al., 2005). 이처럼 심리치료 발전 역사 속에 반영된 심리치료 개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건전한 가치, 삶의 목표, 치료동맹과 응집력을 포함할 수 있다. 먼저 건전한 가치 요인은 높이기 위해 성폭력사범은 '좋은 삶'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동기 강화를 높이고 긍정적 치료적 반응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면서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Ward & Mann, 2004). 나아가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최종목표는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 복귀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Wilson & Yates, 2009). 이런 삶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성폭력사범의 건강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치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료동맹과 응집



력이 필요한데 치료프로그램의 집단지도자와 집단원 간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다(법무부, 2022). 집단심리치료를 경험한 많은 내담자들은 치료적 기법보다 치료자와의 라포 형성 과정에서 경험되는 긍정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Drapeau, 2005). 나아가 성폭력사범으로 구성된 치료 집단 프로그램에서도 집단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치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집단원 간 높은 응집력이 확인할 수 있고, 집단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Beech & Fordham, 1997). 이렇게 성폭력사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치료적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일방적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치료적 동맹과 응집력을 형성하면서 건전한 가치 정립과 안정적인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힘을 길러 줄 때 강력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기본과정은 전체 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사범 중 법원의 판결로 40시간 이하의 이수 명령을 부과받은 기본과정 대상자를 참여자로 정하였다.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고 이전에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4)

구분	분류	빈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연령	20대	2	1
	30대	2	1
	40대	2	0
	50대	3	4
	60대 이상	3	6
학력	초졸	1	2
	중졸	2	2
	고졸	8	6
	대졸(2년제 이상)	1	2
범수	1범	5	7
	2범	2	1
	3범 이상	5	4
형기	1년 이하	2	5
	1년 ~ 2년	1	1
	2년 ~ 3년	4	2
	3년 ~ 4년	3	1
	4년 ~ 5년	2	0
	5년 이상	0	3
합계		12	12

## 2. 측정용 도구

### 1) 성폭력사범 치료 효과 척도(SOTEST)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개발한 척도로 검사태도 요인, 재범유발요인, 치료적 요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형자용 자기보고(Sexual Offender Treatment Effect Scale Toolkit-Self: SOTEST-S)의 전체 문항은 143개이며 치료자용(Sexual Offender Treatment Effect Scale Toolkit-Therapist: SOTEST-T)은 선별검사 17문항, 확장검사 7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치료자는 연구 대상자 선정 후 치료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

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분석에서는 검사태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하위영역을 사용하였다.

〈표 2〉 성폭력사범 치료효과 척도집(SOTEST) 구성요소

구성요소			
검사태도 (타당도)	긍정왜곡	인지/태도 영역 (4요인)	여성에 대한 적대감
	부정왜곡		폭력지지신념
	비일관성		반사회적 태도
자기관리 영역 (2요인)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대인관계 영역 (3요인)	성범죄 합리화
	충동성 및 자기조절 실패		사회 정서적 기만결핍
			고립과 외로움
성적관심 영역 (3요인)	성도착	치료적 영역 (3요인)	낮은 조망수용능력
	성집착		건강한 가치
	폭력과 성의 조건화		삶의 목표
			치료동맹과 응집력

### 2) 자극추구성향척도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Arnett(1994)가 개발한 감각추구성향척도(Arnett inventory of sensation seeking: AIS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개인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자극이나 강도가 높은 자극을 개인이 얼마나 추구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개인의 성격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자극에 대한 추구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총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참가자는 4점의 Likert척도를 통해서 응답한다(1점:전혀아니다, 4점:매우그렇다). Arnett(1994)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빈도분석을 비롯한 전반적인 효과성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활용하였다. 먼저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고,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독립표본 t-검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측정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여 적률 상관계수를 측정하였고, 각 변수가 프로그램 효과성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 절차 및 평가도구 등은 대상자 연구동의 설명 이전에 경기대학교 기관 생명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KGU-20230404-HR-102-04). 이후 참가자 구성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 중 기본과정 대상자이면서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는 형기종료일 6개월 이내 수형자 중 선정하였다. 모집을 위해 선정 대상자들에게 성폭력재범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오리엔테이션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 공고문을 부착하여 안내하였다. 예비 대상자에게는 진행될 연구의 목적, 장소(교정기관내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실),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 중에 참여동기가 높고 연구진행에 적극적인 24명을 선발하였다. 대상자들이 본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구두로 안내하고 서면동의 과정에도 문구를 첨가하여 확인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발된 24명 중 형기종료일이 가까운 순서대로 우선 실험집단으로 배정하고 그 외의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에 배정하여 <표 3>과 같이 프로그램과 검사를 진행했다. 치료자(타인보고식) 검사를 위해서는 사전 면담을 진행한 후 프로그램 초기에 치료자 평가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사후면담과 함께 사후검사를 병행하였다.



<표 3>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사전	처치	사후
실험집단(프로그램)	O1	X	O2
통제집단(무처치)	O3		O4

+ X :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 O1 : 실험집단 사전검사, O2 실험집단 사후검사, O3 : 통제집단 사전검사, O4 통제집단 사후검사

무처치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 검사만 진행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은 없었으며 연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기본과정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실험집단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심리치료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담 전공자로 관련자격을 보유한 자가 진행하였다. 진행은 교정본부에서 발간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매뉴얼에 따라 구조화된 집단상담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폭력사범 기본과정의 단계별 심리치료목표와 회기별 주요 내용은 <표4>와 같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목적 이해, 신뢰감 형성과 동기강화, 그리고 자기와 타인이해 증진을 위한 내용이다. 2단계는 긍정정서의 고양, 성폭력 가해자들의 주요 심리적 특성인 충동성과 분노조절에 중점을 둔 자기조절능력 향상, 그리고 의사소통능력과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 내용이다. 3단계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강간통념 변화에 초점을 둔 재범방지 관련 내용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성관련 법률의 이해 및 변화된 자기 모습에 대한 인식, 미래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본과정 프로그램의 집단치료 방향이 설정된다. 이 단계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참여와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먼저 기본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목적과 집단의 성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인적 목표 설정, 집단 참여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변화를 위한 두려움 다루기, 자신의 인생 돌아보기와 미래의 목표 등을 주제로 하여 진행한다.

2단계는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성에 대한 생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충동성 및 분노표현에 있어서 자기조절훈련, 의사소통 기술 향상 및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집단상담과 교육이 진행된다. 자기 삶의 무게획적 생활습관, 조절이 되지 않거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충동적인 성향에 대해 살펴보고 주의조절을 통해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므로 조절능력을 키우게 된다. 분노조절과 관련하여 자신의 감정·생각·행동을 알아채고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 논박하는 훈련과정을 통해 불편했던 감정을 인식하고 생각과 신념이 바뀌지면 감정과 행동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대해 공감

할 때 비로소 상처에 대한 자기책임도 인식하게 되고 충동성과 분노 감정도 가라앉게 된다. 아울러 계속되는 수용 생활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감정을 덜 위험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집단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본인의 불편한 감정도 안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도록 지원한다.

3단계는 자신의 성적 집착과 성적 문제행동의 원인을 탐색하고 알아차리도록 돕는 과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성폭력을 유발하게 했던 잘못된 성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폭력사건에 관여된 배경요인과 유발요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범죄 경로를 탐색하고 집단원들과 함께 범죄 원인을 찾아보는 작업이 진행된다. 공개가 쉽지 않은 자신의 사건을 발표하면서 스스로의 문제점과 대안행동 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대체로 성폭력의 원인과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성범죄 발생 경로를 심도 깊게 탐색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도 찾아보는 과정이다.

4단계는 성관련 법률의 이해 및 변화된 자기 모습을 인식하고 성폭력 가해 행동의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새로 바뀐 법률에 대한 이해,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생활 계획 세우기 등 출소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단계이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을 앞두고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돌아보며 소감을 나누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면서 기본과정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표 4〉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용

단계	목표	각 회기 (2시간30분)	주제 및 내용
1단계	동기강화	1	○ 프로그램 안내 및 집단원 자기소개
		2	○ 사전 척도검사, 나의 장점 찾기
		3	○ 행복한 삶,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4	○ 미래의 나의 행복한 삶
2단계	자기조절	5	○ 성에 대한 이해 및 생각 점검
		6	○ 성 관련 의사결정표 및 성에 대한 인식 전환
		7	○ 왜곡된 성의식 확인 및 수정과 책임있는 성행동
		8	○ 성적신념, 지식, 통념 확인 및 수정
		9	○ 감정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감정
		10	○ 감정조절능력 향상과 생각, 감정, 상황, 행동 구분하기
		11	○ 성적도착 및 중독증상 이해와 성적인 집착정도 탐색
3단계	재범방지	12	○ 사건 발생 3-6개월 전 돌아보기
		13	○ 사건분석1 (배경요인, 즉시적유발요인) ○ 사건분석(연습사례1)
		14	○ 사건분석(배경요인, 즉시적 유발요인) ○ 사건분석(자기사례)
		15	○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 재범방지 계획(연습사례 과제)
		16	○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 재범방지 계획(자기사례 과제)
		17	○ 성폭력 범죄 특성과 범죄관련 법령
4단계	행동계획	18	○ 성폭력 범죄에 따른 처분(신상정보공개제도등)
		19	○ 피해자 공감 ○ 그 사람 되어보기(갈등상황 및 생각과 감정)
		20	○ 공감의 정의와 단계 ○ 피해자에게 전하는 마음의 편지 쓰기
		21	○ 좋은 삶 계획하기
		22	○ 나의 행복한 삶 계획 ○ 출소후 예상되는 상황 및 대처전략 수립
		23	○ 프로그램 평가 ○ 미래일기 작성(미래의 어느날의 일기)
		24	○ 사후 척도검사, ○ 목표점검 및 소감나누기(프로그램 수료 후 다짐)

※ 주 5회: 일 2회기씩 12일 진행(총 60시간)

## IV.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동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 범수, 형기에 대해서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이( $t=-2.006, p=.057$ ), 범수( $\chi^2=.778, p=.678$ ), 형기수( $\chi^2=7.952$ ,

p=.159)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집단 별 나이, 범수, 형기 빈도 및 차이 검증(N=24)

변인		실험집단(N) M(SD)	통제집단(N) M(SD)	$\chi^2$ 또는 t
나이		46.42 (15.19)	59.92 (17.68)	-2.006
범수	초범	5	7	.778
	재범	2	1	
	3범 이상	5	4	
형기	1년 미만	2	5	7.952
	1년 ~ 2년	1	1	
	2년 ~ 3년	4	2	
	3년 ~ 4년	3	1	
	4년 ~ 5년	2	0	
	5년 ~ 6년	0	3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SOTEST(성폭력사범 치료효과 척도집) 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점수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SOTEST 평균은 35.25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32.25로 평균점수는 3.0의 차이가 있지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t(24) = .508, p = .617$ ), 이 결과를 통해 사전 집단간 동질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SOTEST 총점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N=24)

변인	실험집단(n=12)		통제집단(n=12)		t	p
	M	SD	M	SD		
SOTEST	35.25	12.21	32.25	16.43	.508	.303

† SOTEST : Sexual Offender Treatment Effect Scale Toolkit

## 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SOTEST전체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사후 점수는(M = 27.50, SD=7.75) 통제집단의 사후 점수

(M = 31.90, SD = 17.14) 보다 낮았으며, 실험집단과 무처치통제집단의 차이에 따른 프로그램 종료후 SOTEST 전체 점수의 차이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 22) = 7.35, p = .013], 집단 구분에 따른 사후 SOTEST 점수 변화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F(1, 22) = 6.19, p = .021].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SOTEST 점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N=24)

변인	SS	df	MS	F	p
사전-사후	196.02	1	196.02	7.35*	.013
집단*사전-사후	165.02	1	165.02	6.19*	.021
오차	586.46	22			

\* p<.05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의 효과성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SOTEST의 하위요인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SOTEST의 하위요인 중 인지태도( $t=3.218, p<.01$ )와 치료적요인( $t=-3.859, p<.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자기관리( $t=1.494, p>.05$ ), 대인관계( $t=-1.291, p>.05$ ), 성적관심( $t=1.609,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실험집단 사전-사후 차이검증 결과(N=12)

하위요인	사전평가		사후평가		t
	M	SD	M	SD	
인지태도	12.58	7.57	5.92	5.45	3.218**
자기관리	7.83	4.17	6.33	3.47	1.494
대인관계	13.25	3.11	14.33	1.16	-1.291
성적관심	1.58	2.58	.92	1.78	1.609
치료적요인	10.00	4.97	14.42	1.67	-3.859**

\*\* p<.01

## 4. 프로그램 효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 탐색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은 사전사후 점수차이, 나이, 범수, REPI(재범위험성), 교정시설내 처우구분 등급인 경비처우급, 자극추구성향정도이었다. 그 분석결과는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변인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N=24)

변인	M	SD	1	2	3	4	5	6
1 사전사후차이	4.04	8.08						
2 나이	53.17	17.53	.19					
3 범수	2.29	1.98	.26	-.03				
4 REPI	3.71	1.04	.29	.13	.34			
5 경비처우급	2.83	1.04	.17	.31	.19	.43		
6 자극추구성향	49.79	5.03	.12	.34	.09	-.14	.14	

다음으로 여러변인들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나이, 범수, REPI, 경비처우급, 자극추구정도, 집단구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 = 3.40, p < .05, adjR2 = .31$ ), 집단구분( $\beta = .68, p < .01$ )이 유일하게 프로그램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변인들 중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구분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표 10〉 측정 변인들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N=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p	VIF
효과성	(상수)	-17.42	15.89		-1.10	.288	
	나이	.19	.10	.41	1.96	.067	1.47
	범수	.20	.78	.05	.25	.806	1.24
	REPI	1.98	1.62	.25	1.22	.239	1.45
	경비처우급	.73	1.58	.10	.47	.647	1.40
	자극추구	-.08	.32	-.05	-.24	.811	1.29
	집단구분	10.73	3.2	.68	3.40	.003**	1.34

$F = 2.76(p < .05), R2 = .70, adjR2 = .31, Durbin-Watson = 2.16$

### 5. 치료자 및 대상자 평가 차이분석

SOTEST는 수형자용 검사(자기보고식)와 치료자용(타인보고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 심리치료 기본과정에 참여한 수형자의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와 치료자의 타인보고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탐색하기 위해 1차로 치료자의 사전사후 평가자료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치료

자가 평가한 SOTEST-T의 전체 사후 점수는( $M = 16.00, SD=5.15$ )는 사전 점수( $M = 20.75, SD = 6.17$ ) 보다 낮았으며,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치료자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에 참여한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추가로 하위 요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태도’요인( $M = 4.50, SD = 1.38$ )과 ‘치료적요인( $M = 1.58, SD = 1.51$ )’의 사후 점수는 사전 점수보다 낮았으며, 유의수준  $p=.01$  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자기관리’요인( $M = 2.08, SD = .51$ )과 ‘대인관계’요인( $M = 3.08, SD = 1.17$ ), ‘성적관심’요인( $M = 3.25, SD = 1.60$ )의 사후 점수는 사전 점수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t 점수가 2점대 초반으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치료자의 SOTSET-T 사전사후 평가 차이(N=12)

요인	사전평가		사후평가		t
	M	SD	M	SD	
인지태도	5.50	1.24	4.50	1.38	4.690**
자기관리	2.50	.90	2.08	.51	2.159
대인관계	3.50	1.44	3.08	1.17	2.159
성적관심	3.92	1.50	3.25	1.60	2.000
치료적요인	3.25	1.66	1.58	1.51	-3.252**

다음으로 수형자와 치료자의 평가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하위 요인 점수차이의 유의성을 〈표 12〉에 제시했다. 성폭력 심리치료 기본과정에 참여한 수형자의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와 치료자의 타인보고의 사전사후 차이의 유의성을 근거로 비교한 결과 SOTEST의 하위요인 중 ‘인지태도’와 ‘치료적요인’은 동일하게 사전·사후 검사결과와의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관리’, ‘대인관계’, ‘성적관심’ 요인 역시 동일하게 사전·사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수형자와 치료자의 SOTEST 하위요인 평가 비교(N=12)

변인	자기보고(수형자) t	타인보고(치료자) t	일치여부
1 인지태도	3.218**	4.690**	일치
2 자기관리	1.494	2.159	일치
3 대인관계	-1.291	2.159	일치
4 성적관심	1.609	2.000	일치
5 치료적요인	-3.859**	-3.252**	일치

## V. 논의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수형자 중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진행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평가를 위해 2022년 법무부가 개발한 성폭력 프로그램효과성 평가 척도(SOTEST)를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수형자의 자기보고 결과와 치료자용 타인보고(SOTEST-T) 결과와 교차검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시설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한 치료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자기존중감’, ‘강간통념’, ‘상태특성 분노표현’, ‘충동성’, ‘아동성추행지표’, ‘고독감’, ‘성을 이용한 대응’ 등 기존에 국내외에서 성폭력범죄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척도를 통하여 효과성을 검증 하였으나, 최근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만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화한 ‘성폭력사범 치료 효과 척도집’을 통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 및 타당화한 효과성 측정 척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평가점수에서 유의한 사전·사후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를 본 연구에서 추가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었다.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평가 차이에 기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죄 횟수, REPI 등급(재범위험성 정도),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자극추구성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영향의 존재 여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만 사전·사후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폭력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지하는 부가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에 대한 시도이다. 보통 평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기 보고식 반응을 근거로 한 심리평가는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관정하는 다른 대안적 자료보다 유용(Kim & Lee, 2006; Hough et al., 1990)할 수 있지만 수검자의 솔직한 반응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특히 경향성을 보이거나 편향 반응, 정확성을 전제하지 못한 응답 등은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정수임, 신동희, 2019).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폭력사범 치료 효과 척도(SOTEST)에서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치료자의 평가를 통해 교차 검증하

며 자기보고식 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효과성을 측정된 결과 전체척도의 하위요인 중 나타난 자기보고 평가는 타인보고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성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내놓은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가 특수한 환경인 교정 장면에서도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연구의 참고 지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전·사후 검사결과,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효과성은 존재하지만, 하위요인 중 일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였다. 성범죄의 합리화 또는 강간통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나, 자신의 범죄로 얻고자 했던 욕구를 알아차리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방법을 통해 이를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개선은 보이나 재범 유발요인 중 자기관리 영역이나 대인관계 영역의 변화 또는 성적인 집착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태도나 인지의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Aos et al., 2001) 실제로 현장에서는 성폭력사범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자주 활용한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생애초기 양육자나 성인과의 적절한 관계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공감 능력을 비롯한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2008),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Marshall et al., 1999)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두드러진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개입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교육과 훈련을 수용생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연구에서 분석한 표본수의 한계나 성폭력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운영의 짧은 시간의 한계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정기관내 성폭력사범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경우 60시간동안 진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수명령이나 REPI, 범수 등을 고려하여 60시간 이상의 장기프로그램(예: 집중과정 100시간, 심화과정 300시간 등)에서 본 연구의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나 제한점 등이 개선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기본과정(60시간)의 경우에도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표본수가 충분히 증가될 때에도 하위요인의 효과성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OTEST는 성폭력사범에게서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성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나타나는 응답자의 방어나 저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타당도 요인을 개발하여 긍정왜곡, 부정왜곡, 비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으로 인해 타당도척도의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도척도에서 이상 경향성이 나타난 표본을 제외하거나 별도로 군집화하여 분석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리평가도구의 타당도척도와 비교하여 성폭력사범의 저항이나 방어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의 치료자용 검사 결과 중 ‘치료태도(긍정왜곡, 부정왜곡, 비일관성)’ 영역의 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확장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치료자용확장검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경아, (2019), "출소자의 심리특성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대검찰청, (2022), 2021 범죄분석.

송원영, (2007),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원영/오경자/신의진, (2008), 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개발 및 단기 효과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2), 547-569.

송원영/노일석/신의진, (2013), 청소년 성폭력사범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7년 추적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pp.667-682.

박성훈/김한균/김영규/박철현,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1-570.

이선영, (2012), 아동성폭력범의 정서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무부, (2022),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영아/정보라, (2017),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48, pp.127-147.

윤정숙/박정일/여운철, (2011),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06.

윤정숙, (2012), 교정시설내 성범죄자의 치료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교정담론, 6:1, pp.215-242.

윤정숙, (2019), 교정시설내 성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 평가연구: 치료내 변화 (within-treatment change)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3(1), pp.99-126.

정수임/신동희, (2019), 과학과 자기보고식 정의적 영역 평가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3), pp.363-377.

조주은, (2012), 성폭력범죄자 교정·치료 및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530호, 국회입법조사처.

최광성/변상해 (2020), 교정시설 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담론, 14:3, pp.117-143.

■ 외국문헌

Abel, G. G., Huffman, J., Warberg, B., & Holland, C. L. (1998). Visual reaction time and plethysmography as measures of sexual interest in child molest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0, pp.81-95.

Abel, G.G.& Wiegel, M. (2009). Visual reaction time: Development, theory, empiricalevidence, and beyond. In F.M.Saleh, A.J.Grudzinskas, Jr., J.M. Bradford, & D. J. Brodsky (Eds.), *Sex ofender: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treatment, and legal issues* (pp. 101-118). NY: Oxford University Press

Aos, S., Phipps, P., Barnoski, R., & Lieb, R. (2001). *The Comparative Costs and Benefits of Programs To Reduce Crime*. Version 4.0.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pp.289-296.

Beech, A., & Fordham, A. S. (1997). Therapeutic climate of 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9(3), pp.219-237.

Becker, J., & Murphy, W. (1998). What we know and don't know about assessing and treating sex offender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4, pp.116-137.

- Brown, S. (2005). *Treating Sex Offenders An introduction to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s*. USA and Canada: Willan Publishing.
- Burt, M. R. (1983). Justifying personal violence: A comparison of rapists and the general public. *Victimology*.
- Cortoni, F., Heil, P., & Marshall, W. L. (1996). Sex as a coping mechanism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and intimacy deficits in sexual offending. Paper presented at the 15th Annual Research and Treatment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Chicago, IL.
- Drapeau, M. (2005). Research on the processes involved in treating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7(2), pp.117-125.
- Hall, G. C. N. (1995). Sexual offender recidivism revisited: A meta-analysis of recent treatment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pp.802-809.
- Hanson, R. K., & Bussie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pp.348-362.
- Hanson, R. K., & Harris, A. J. (2000). Where should we intervene? Dynamic predictors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1), pp.6-35.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2004).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An updated meta-analysis 2004-02.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Harkins, L., & Beech, A. R. (2007). A review of the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sexual offender treatment: Risk, need, responsivity, and process issu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6), pp.615-627.
- Helmus, L., Hanson, R. K., Babchishin, K. M., & Mann, R. E. (2013). Attitudes supportive of sexual offending predict recidivism: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14(1), pp.34-53.
- Hough, L., Eaton, N., Dunnette, M., Kamp, J., & McCloy, R. (1990).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personality constructs and the effect of response distortion on those validit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pp.581-595.
- Hudson, K. (2005). *Offending Identities: Sex Offenders' Perspectives on their Treatment and Management*: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6(2), pp.359-361.
- Holmes, S. T., & Holmes, R. M. *Sex crimes, Patterns and behaviors*, Sage Publications, 2002.
- Kim, M., & Lee, H. (2006). A study of faking on normative and ipsative measures of personality for personnel selection.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3), pp.371-393.
- Marshall, W. L., Anderson, D., & Fernandez, Y. (1999). *Cognitive behaviou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No Title).
- Marshall, W. L., & Laws, D. R. (2003). A brief history of behavioral and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es to sexual offender treatment: Part 2. The modern era.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 pp.93-120.
- Marshall, W. L. (2005). "Therapist style in sexual offender treatment: Influence on indices of change.", *Sexual Abuse*, Vol. 17, pp.109-116.
- Marshall, W. L., Ward, T., Mann, R. E., Moulden, H., Fernandez, Y. M., Serran, G., & Marshall, L. E. (2005). Working positively with sexual offenders: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9), pp.1096-1114.
- Ward, T., Hudson, S. M., Marshall, W. L., & Siegert, R. (1995). Attachment style and intimacy deficits in sexual offenders: A theoretical Framework. *Sexual Abuse*, 7(4), pp.317-335.
- Ward, T., Hudson, S. M., Johnston, L., & Marshall, W. L. (1997). Cognitive distortions in sex offenders: An integr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5), pp.479-507.
- Ward, T., & Stewart, C. A. (2003).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s: Risk management and good liv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4), pp.353.
- Ward, T., & Mann, R. (2004). Good lives and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 positive approach to sex offender treatment.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p.598-616.
- Ward, T., & Gannon, T. A. (2006). Rehabilitation, etiology, and self-regulation: The comprehensive good lives model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1), pp.77-94.
- Wilson, R. J., & Yates, P. M. (2009). Effective interventions and the Good Lives Model: Maximizing treatment gains for sexual offende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3), pp.157-161.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3rd ed.). New York: Basic Books.
- Yates, P. M. (2003).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n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sex offender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2(3/4), pp.195-232.
- Watson, David, Clark, Lee Anna. (1992). "Affects Separable and Inseparable: On the Hierarchical Arrangement of the Negative A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Mar92, Vol. 62 Issue 3, pp.489-505. 17p. 9 Charts.
- West, S. C.,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Zuckerman, M. (1971). Dimensionsofsensationseeking. *Journal of Consultingand Clinical Psychology*,36(1),45-52.

## 가석방제도 개선을 위한 형기단축제도 (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문창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목차

- I. 서론
- II.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원인과 해소 방안
- III.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IV.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
- V. 결론

### 국문요약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딧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주제어 : 교도소 과밀수용, 가석방제도, 가석방 대상자의 실질적 요건, 가석방 대상자의 기준, 형기단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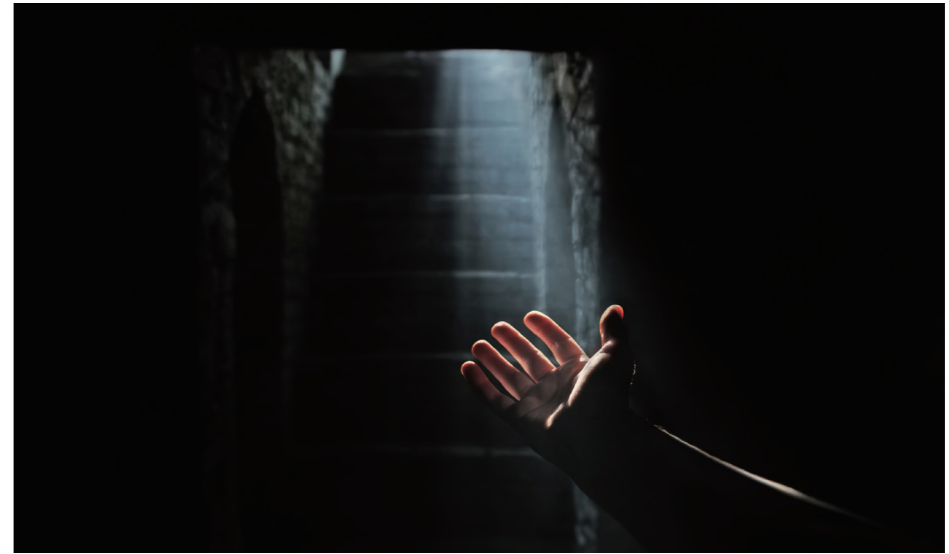


## I. 서론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4만 명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5만 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sup>1)</sup> 2024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4년 교정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23년 교정시설 전체 수용 정원은 4만 9,922명임에 반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6,577명으로 수용 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113.3%에 이르고 있다.<sup>2)</sup> 이러한 과밀수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sup>3)</sup>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해소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sup>4)</sup> 이에 따라 2017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최초로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sup>5)</sup>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권리는 물론,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활동을 제약하고, 각종 교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가석방의 활성화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물론 가석방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법률적 성격이나 대상자의 선발기준 또는 심사 과정에서의 정당성, 재범 예측의 타당성, 심사기관의 이원적 체계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sup>6)</sup> 정기형 제도의 결함에 대한 보충, 올바른 수형 생활의 유도, 수형 시설 내의 질서유지, 교정 효과의 상승, 재범의 방지, 과밀수용의 해소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한 제도이다.<sup>7)</sup>

가석방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 ‘우량수형자 석방령’을 제정·시행하였으나,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sup>8)</sup> 그러나 미국의 기결수형자 석방과는 다른 형태로 정착하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기결수형자 석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의 가석방 형태와 같은 가석방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가석방 둘째, 전체 형기에서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적용을 제외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 가석방되는 ‘필요적 가석방’ 셋째, 기타 조건부 가석방 넷째, 만기 출소이다.<sup>9)</sup> 이중 현재 우리나라가 채용하지 않는 형기단축제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가석방제도와 함께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병행하는 것은 가석방제도가 가진 한계를 형기단축제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형기단축제도는 교도소 과밀인구를 조절하고,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교도소 내에서 만든 제품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가석방제도가 과거에 범한 범죄와 돌아갈 곳의 생활환경 등 재범의 우려에 주목하는 반면, 형기단축제도는 자신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주목한다. 물론 형기단축제도가 가진 단점도 많겠지만, 일선 교정시설의 실무자들을 통해 많이 주장되는 이 제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10)</sup> 이에 이 논문은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두 제도가 서로를 보완하며 병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형기단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는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윤숙 외, (2023), 「2022 범죄백서」, pp.344, 법무연수원.  
 2) 법무부, (2024), 「2024년 교정통계연보」, pp.63, 법무부 교정본부.  
 3)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헌법재판소 2023.02.23. 선고 2021헌마16 결정; 헌법재판소 2024.01.25. 선고 2022헌마150 결정 등.  
 4) 이성호 외, (2017),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토론회」, pp.6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5) 부산고등법원 2017.08.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등.  
 6) 이정봉, (2004),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4집, pp.360,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7) 김선태, (2017),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75호), pp.31, 한국교정학회.  
 8) 김선태, 앞의 글, pp.33.

9) 이희정, (2021),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 (통권 제89호), pp.22, 한국교정학회.  
 10) 장영민/탁희성, (1993),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pp.1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II.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해소 방안

### 1.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

우리 교정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밀수용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예컨대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2년 45,488명이었다가, 2014년 50,128명으로 증가하여 5만 명대에 진입하였고, 2017년 57,29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현재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6,577명에 이르고 있다.<sup>12)</sup> 이처럼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는 교정 정책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sup>13)</sup> 교정시설의 수용밀도가 높을수록 수용 사고의 발생 건수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sup>14)</sup>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교정시설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보수화와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대처와 응징을 요구하면서도,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의 집행에는 소극적이라는 문제이다.<sup>15)</sup> 따라서 과밀수용 문제는 조만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여건 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1일 평균 수용인원 중 미결수용자의 비율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 명대를 유지해 오다,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증감을 이어가면서도 꾸준히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미결수용자의 수를 살펴보면, 2012년 14,186명에서 2016년 2만 명대로 진입한 후 증감을 이어오다 2022년 현재 17,736명을 기록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는 2009년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재판이 확대되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전체 수용자의 30% 중반대를 이어가고 있다.<sup>16)</sup> 이러한 미결수용자의 비율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2016년 일본의 미결수용자 비율은 전체 수용인원의 10.6%에 불과하다.<sup>17)</sup> 그러나 일본도 우리처럼 과밀수용의 문제를 경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신설하고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향했으며, 기소유예를 확대 적용하는 등 미결수용자의 비율을 감소시켰다.



#### 2)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 현황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석방자 70,672명 중 형 집행률이 50% 미만은 39명으로 0.1%, 60% 미만은 15명으로 0%, 70% 미만은 168명으로 0.2%, 80% 미만은 8,956명으로 12.7%, 90% 미만은 41,782명으로 59.1%, 90% 이상은 19,712명으로 27.9%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은 8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정시설 과밀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우리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sup>18)</sup> 이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형기 이수 기간을 무기징역의 경우 15년으로, 유기징역의 경우 4분의 1을 경과 한 후로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지만,<sup>19)</sup> 우리 형법이 가석방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가석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선고형의 3분의 2가 경과 한 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4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 한 후, 4년 이상의 장기수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후 가석방할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법률상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석방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sup>21)</sup>

11) 김선태, 앞의 글, pp.35.

12) 법무부, 앞의 책, pp.63.

13) 김정연 외,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7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Peter L. Nacci, Hough E. Teitelbaum, & Jerry Prather, (1977), 'Population Density and Inmate Misconduct Rates in Federal Prison System', Federal Probation, vol 41:27.

15) 이윤호, (2021), 교정학, pp.91, 박영사.

16) 정윤숙 외, 앞의 책, pp.343 이하.

17) 이희정, 앞의 글, pp.13.

18) 형법,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참조.

19) 김준성, (2013),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3호, pp.277,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 남선모/이인근, (2014),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53호, pp.244 이하, 한국법학회.

21) 류병관,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pp.10 이하, 법무부; 남선모/이인근, 앞의 글, pp.254.

### 3) 출소자의 재복역률 현황

수형자가 출소한 후, 3년 이내 또다시 교도소에 수용되는 ‘출소자 재복역률’의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평균을 살펴보면, 형기 종료의 경우 30.9%, 가석방의 경우에는 7.4%를 나타내고 있다.<sup>22)</sup>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만기 출소자의 재복역률에 비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은, 가석방되고자 노력하는 수형자와 그렇지 않은 수형자의 향후 삶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석방이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범죄 수별 재복역 인원 현황’을 확인해 보면, 초범의 경우 10.6%, 2범의 경우 25.9%, 3범의 경우 39.3%, 4범의 경우 46.6%, 5범 이상의 경우 58.8%를 나타내고 있다.<sup>23)</sup> 이 통계를 통해 교화·개선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초범의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여 교도소 내의 악풍감염과 부문화 접촉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같은 기간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을 확인해 보면, 절도죄의 경우 46.3%,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44.7%로 타 범죄에 비해 월등하게 재복역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교화·개선되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생계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 사회에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정윤숙 외, 앞의 책, pp.175.

23) 교정기획과, (2023), 「2023 교정통계 연보」, pp.178 이하, 법무부 교정본부.

24) 교정기획과, 앞의 책, pp.180.

## 2. 교도소 과밀수용의 해소 방안

교정(矯正)이라는 용어는 대상을 ‘바르게 고친다’라는 목적 지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정은 수용자의 구금을 통해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응보·일반예방·특별예방 등을 추구하지만, 교화·개선을 중시하며 이를 우선하여 추구하는 현대 교정 이념을 담고 있다.<sup>25)</sup> 그러므로 불필요한 구금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가석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꾸준한 지적과 교정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허가자의 형 집행률이 아직도 높은 것은 범죄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미흡하고, 가석방 심사기관이 사회 방위적 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회 내 처우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가석방제도가 가진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sup>26)</sup> 그러나 교도소 과밀현상의 해소와 수용 능력 통제는 가석방이 주는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주된 기능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27)</sup>

### 1) ‘정문 정책(front - door)’ 전략의 효율적 시행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Blumstein이 제시한 전략 중 ‘정문 정책(front - door)’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가택 구금, 벌금형, 배상 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 구금적 제재를 통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sup>28)</sup> 이와 같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범죄자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결수형자를 감소시키는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등 형사사법 정책의 실천이 요구된다.<sup>29)</sup> 또한 형벌의 가장 큰 제지 효과는 확실성에 있는 것이지 엄중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sup>30)</sup> 따라서 지나친 장기 구금은 시간적·금전적·사회적 낭비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형벌의 제지 효과는 구금 초기에 가장 크게 발휘되므로 단기형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고

25) 이백철, (2020), 교정학, pp.5, 교육과학사.

26) 이정봉, 앞의 글, pp.392 이하.

27) 김정연 외, 앞의 책, pp.41.

28) 이윤호, 앞의 책, pp.93.

29) 이희정, 앞의 글, pp.14.

30) Franklin E. Zimring & Gordon J. Hawkins, (1976), Deterrence :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61.

려해야 한다.<sup>31)</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의 과밀현상 보다 구치소의 과밀현상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교정 당국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 2) '후문 정책(back - door)' 전략의 효율적 시행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Blumstein이 제시한 전략 중 '후문 정책(back - door)'으로는 보호관찰부가석방, 외부 통근 등 사회 내 처우,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등을 통해 형기 종료 이전에 출소시키는 것이다.<sup>32)</sup> 이와 더불어 3개월 미만의 단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부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분류심사에서 제외되므로<sup>33)</sup>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의 영역 밖에 놓이게 된다.<sup>34)</sup> 따라서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단기수형자에게 벌금 등의 대체 형벌이 바람직하고, 충격 구금을 위한 수형의 경우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년의 경우에만 실시하는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재평가이다. 이 제도를 당장 입법에 반영할 필요성은 없지만, 부정기형에 흐르는 입법 정신, 즉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화·개선을 통한 재사회화 추구 이념은 형 집행 과정에서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sup>35)</sup>

## III.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1.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1) "개전의 정"에 대한 평가

수형자 중 어떤 자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는 가석방제도의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 형법 제72조 제1항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는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상의 양호", "개전의 정",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sup>36)</sup>

실제 가석방심사에서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반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을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경비처 우급,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가석방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의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이다. 이처럼 교화·개선이라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주요 요인이 내적인 변화이므로 이를 계량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외형적인 요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죄의 동기나 죄명 등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었으며, 보호 관계의 양호 여부(접견, 서신 등), 합의 또는 변제 여부 등은 수형자의 개선 의지와는 무관한 요인에 해당한다.<sup>37)</sup> 그리고 생활환경 등은 이미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므로 재범의 위험성 지표로써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31) Michael Tonry, (1979), 「Crime and Justice」, pp.257, University of Chicago.

32) 이윤호, 앞의 책, pp.93.

33)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72, 2024. 2. 8. 일부개정), 제62조 참조.

34) 김선태, 앞의 글, pp.46.

35) 손동권, (2003), 미국의 자유형과 그 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pp.425, 한국형사정책학회.

36) 정진영, (2003),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문제의 검토', 교정연구 제20호, pp.174, 한국교정학회.

37) 이정봉, 앞의 글, pp.24.



## 2)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 : Correction Recidivism Prediction Index)'의 기준

2012년 법무부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조기 예측을 위한 평가도구로써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를 마련하였다. 이 지표는 23개 문항과 각 문항에 따른 할당 점수 및 등급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38)</sup> 그러나 이 문항들은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의 전체 형기,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최초 형 확정시의 나이, 이전 범죄 출소시의 나이, 학창 시절의 처벌 경험, 입소 전 경제 상태 및 거주상태 등 인구 과학적인 요인에 치중되어 있다.<sup>39)</sup>

반면 죄명, 범죄시의 정신상태,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횟수,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재범기간, 집행유예 취소·실효 횟수 등은 이미 선고형에 반영된 지표이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형벌의 가중 요소를 반복하여 반영하는 이중 평가의 위험성이 있다.<sup>40)</sup> 그리고 저학력자·일용직·동거 횟수가 많은 자는 불이익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인권침해와 차별 그리고 편견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에 의해 장래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sup>41)</sup>

38)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는 성별, 죄명, 피해자, 범죄시 정신상태,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형기,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최초 형확정 연령, 재범기간, 이전 범죄 출소 연령대, 집행유예 취소/실효 횟수, 동거 횟수, 학창 시절(18세 이하) 처벌 경험, 범죄시 직업, 입소 전 경제 상태, 입소 전 거주상태, 정신병원 치료 경력, 학력,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 교정 심리검사 비행 성향, 교정 심리검사 포기 성향 등 23개 문항이 있다. -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39) 김정연 외, 앞의 글, pp.46.

40) 박미량, (2015), '가석방 심사에 있어 재량권과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제67호, pp.164, 한국교정학회.

41) 강동범/이강민, (2017),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pp.11, 한국교정학회.

## 2. 가석방제도의 발전 방향

가석방제도는 시설 내 처우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 수형자의 자율 의지에 기초하여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통해 수형자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sup>42)</sup> 따라서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특별예방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그러므로 형기 종료가 임박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기보다는 사회복귀 준비가 되어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가석방이 가진 원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44)</sup>

더불어 순수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과 가능성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형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이다. 따라서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가석방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전의 정"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의 정도는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5)</sup> 그리고 개선 의지는 수형자가 사회 적응 능력과 생계 능력 등을 고취하기 위한 기술의 습득, 작업과 봉사를 통한 근면·성실의 습관, 과학적 지표를 통한 사회에 대한 적대심과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심리적 태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예측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도소 내의 무조건적인 규율의 준수, 명령의 복종 등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 집행을 견뎌낸 자가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된다.<sup>46)</sup> 따라서 가석방의 요건에 대한 예측의 정형화가 요구되며, 수형자에게 교정시설 내의 처우 프로그램 참여가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강요에 의한 참여는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이 절실하다.

42) 남선모/이인근, 앞의 글, pp.240.

43) 정승환/신은영, (2011),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pp.217, 한국형사정책학회.

44) 이희정, 앞의 글, pp.11.

45) 류병관, 앞의 글, pp.29.

46) 배중대, (2017), 형법총론, pp.616, 홍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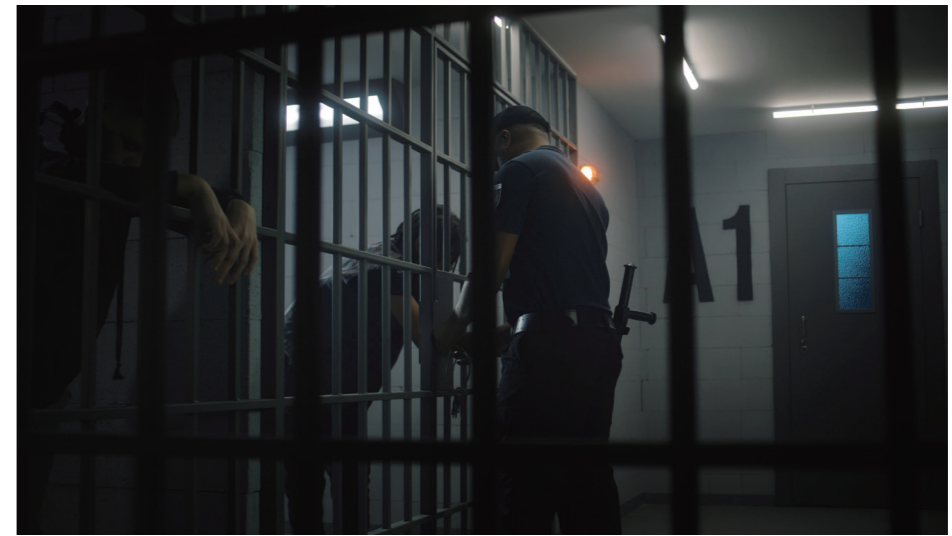
### 1.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연혁과 의미

형기단축제도는 작업성적,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 교도소 내에서의 선행 등 특별한 공적에 따라 일정 기간의 형기를 단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전부터 ‘선시 제도’라고 불리어졌지만, “Good Time”을 선시(善時)라고 직역함으로써 오히려 의미의 모호성이 더해졌다.<sup>47)</sup> 이 제도를 통해 단축되는 형기는 수형자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이를 ‘형기 자기 단축제도’, ‘선행 보상제도’ 또는 ‘선행 감형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sup>48)</sup> 이 제도는 가혹한 정기형의 완화정책으로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에 의해 고안되었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와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석방제도의 도입으로 쇠퇴하였지만, 가석방제도와 병용되고 있다.<sup>49)</sup>

우리나라도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가석방제도를 시행하면서 형기단축제도를 폐지하였지만, 해방 이후부터 미군정시대인 1948년 3월 31일 법령 제172호로 ‘우량수형자 석방령’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sup>50)</sup> 이 제도는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조절하고, 선행을 장려하여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오늘날은 수형자에게 열악한 교정시설로부터 재사회화를 촉진한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제도의 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전체 형기에서 감해줄 것인가도 시행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sup>51)</sup> 이 제도를 가석방제도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가석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의 비교·분석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가석방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사회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지만,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즉, 근면과 선행



이 선정 기준이 된다. 둘째,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선 의사 또는 노력과는 무관한 보호관계 또는 범죄의 태양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형기단축제도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석방일을 앞당길 수 있다. 셋째, 가석방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형기단축제도는 행정권에 의해 형기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sup>52)</sup>

### 3. 외국의 형기단축제도 운영 사례

미국의 경우 48개 주와 콜롬비아 자치구에서 형기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선시법은 1817년 뉴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법률은 5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초범자를 대상으로 형기의 4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복역한 형기와 선시로 인해 감형받은 기간이 수형자가 선고받은 기간에 해당할 때 자동으로 석방되는 자동석방제도(mandatory release, 필요적 가석방)를 채택하고 있지만, 뉴욕주와 미주리주에서는 가석방제도에 의해 가석방된 수형자와 형기단축제도에 의해 자동 석방된 수형자 모두 같은 조건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sup>53)</sup>

47) 이에 따라 이 논문은 “Good Time System”을 ‘형기단축제도’라고 표기한다.

48) 박영규, (2013), ‘선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연구 통권 제60호, pp.101, 한국교정학회.

49) 大谷 實, (1987), 刑事政策講義, pp.290, 成文堂.

50) 박영규, 앞의 글, pp.101.

51) John Ortiz Smykla, (1985), ‘Probation and Parole : Crime Control in Community’, pp.108,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2) 박영규, 앞의 글, pp.102.

53) James A. Inciardi, (1999), 「Criminal Justice」 6th Edition, pp.550, Alabama Original Materials.

미국 연방과 대부분 주에서는 법률상 선행점수(Statutory good time) 또는 취득 점수(gain time) 등으로 불리는 ‘모범수 형기 단축 점수’와 공로 선행 시수(Meritorious good time), 노역 시수(Work time) 또는 근로 선행 시수(Industrial good time)라고 불리는 ‘수형 시설의 교육’, ‘근로의 참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혼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수형 규칙을 준수하고 수형 시설의 근로 방침에 협조적이며 능동적인 근로 의욕을 가진 수형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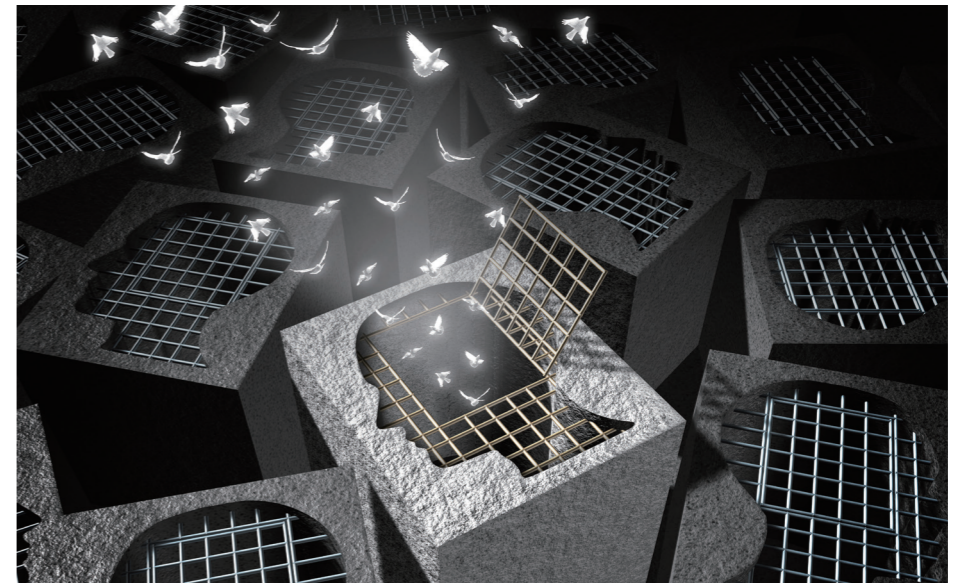
그리스의 경우 1952년부터 작업에 의한 수용 기간 단축이 제도화되어 있다. 즉, 6개월 이상의 형에 처한 수형자는 교정시설 외에서 1일의 작업마다 2일간 단축을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1일의 작업마다 1.5일의 단축을 인정한다. 그러나 작업거부 또는 징벌의 부과가 있으면 단축은 무효가 되며, 가석방은 보호관찰 사항의 중대한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지만, 작업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은 취소되지 않는다.<sup>55)</sup>

스페인의 경우 1982년부터 구류를 포함한 모든 구금에 대해 작업에 의한 수용 기간 단축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2일의 작업마다 1일간 단축을 인정한다. 연간 최대 75일까지 단축을 인정하지만, 가석방과 결합하면 형기의 3분의 1 이후에는 출소가 가능해진다.<sup>56)</sup>

프랑스의 경우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수형자에게 수형 기간을 단축해 주는 모범수에 대한 형기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전(Code de la procédure pénale)의 제4절 감형에 규정되어 있는 감형제도(réduction de peine)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자유형의 경우, 수형자의 행실을 고려하여 형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형집행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닌 법원에 의해 감형이 결정된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수형자에게 자신의 형기에 비례한 감형 기간이 사전에 제공되며 행형성적이 좋지 않거나, 악행을 행한 경우, 감형 기간이 삭제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up>57)</sup>

#### 4.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가석방제도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기를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주의에 반한다는 제도 자체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석



방제도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가석방이 오히려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법원이 가석방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형 가석방제도’와 프랑스식 법원에 의한 감형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면, 외국에서 실시하는 형기단축제도 중에는 보호관찰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기 자체를 단축하는 ‘형기 자기 단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기를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뉴욕주와 미주리주처럼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가석방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가석방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가석방적격심사기준’과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를 통해 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으로 조기 석방을 쟁취하고자 하는 수형자가 더욱 개선·갱생의 의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sup>58)</sup> 교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형자를 교화·개선하지 못하는 책임은 교정기관의 몫으로 보아

54) 주성빈/윤해성, (2022), ‘수형자의 능동적 사회복귀 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2권 제1호, pp.9, 한국정책개발학회.

55) 山下邦也, (1993), 新-刑事政策, pp.280, 日本評論社.

56) 山下邦也, 前掲書, pp.281.

57) 주성빈/윤해성, 앞의 글, pp.11.

58) 장영민/탁희성, 앞의 글, pp.191.

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교활한 수형자가 있음을 경계<sup>59)</sup>하기보다는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형기단축제도로써 가석방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단지 가석방제도의 평가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형기단축제도의 병용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범죄에 대한 인류의 대책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교정의 이념 또한 변화와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형벌개념이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함으로써 응보적 기능과 함께 사회 방위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면, 현대적 형벌개념은 더 이상 구금이 요구되지 않는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가두어 두는 것은 교화의 기회와 사회적응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수형자를 반사회적 인간으로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수형자에 대한 교정의 사회화 즉, 사회 내 처우가 중요한 역할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가석방제도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정 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인 형사정책의 추세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60)</sup>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가석방 대상자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 등 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제도의 비판적 견해 중 교활한 수형자의 악용 가능성은 가석방제도에서도 존재한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 개선된 척 꾸미는 교활한 수형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가석방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듯,<sup>61)</sup> 형기단축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며,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 가야 할 부작용

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형기 단축 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 자격증의 취득 여부이다. 예컨대 토목, 건축, 조경, 용접 등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석방 후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수형 시설 내 작업 일수이다. 그리스의 경우처럼 수형 시설 내 1일의 작업마다 1.5일의 단축을 인정하고, 스페인의 경우처럼 한계를 정하여 최대 1년에 73일 즉, 20% 내에서 형기 단축 일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수형 시설 외 작업 일수이다. 그리스의 경우처럼 수형 시설 외 1일의 작업마다 2일의 단축을 인정해야 한다. 시설 내 작업보다 시설 외 작업은 수형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작업을 통해 사회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단축 일수를 가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또한 한계를 정하여 최대 1년에 73일 내에서 형기 단축 일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시설 내 작업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년에 73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정교육의 참여이다. 근로의 참여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정교육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정교육 참여는 형기 단축 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형 시설 내 문제를 일으킨 경우, 형기 단축 누적 점수에 대한 삭감이다. 이를 통해 수형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수형자가 적정범으로 다시 수형자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9) 박영규, 앞의 글, pp.104.

60) 이정봉, 앞의 글, pp.392.

61) 배종대/홍영기, (2019), 형사정책, pp.462, 홍문사.



형기단축제도 또한 완벽한 제도라 할 수 없고 내재한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석방제도와 병용한다면 서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그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경과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형기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즉 1년에 최대 73일까지만 형기 단축을 인정함으로써 가석방제도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해야 하며, 형기 단축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해야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동범/이강민, (2017),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교정기획과, (2023), 「2023 교정통계 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김선태, (2017),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75호), 한국교정학회.  
 김정연 외,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성, (2013),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3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남선모/이인근, (2014),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53호, 한국법학회.  
 류병관,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법무부.  
 박미량, (2015), '가석방 심사에 있어 재량권과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제67호, 한국교정학회.  
 박영규, (2013), '선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연구 통권 제60호, 한국교정학회.  
 배종대, (2017), 형법총론, 홍문사.  
 \_\_\_\_\_, 홍영기, (2019), 형사정책, 홍문사.  
 법무부, (2024), 「2024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손동권, (2003), '미국의 자유형과 그 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이백철, (2020), 교정학, 교육과학사.  
 이성호 외, (2017),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운호, (2021), 교정학, 박영사.  
 이정봉, (2004),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4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희정, (2021),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 (통권 제89호), 한국교정학회.  
 장영민/탁희성, (1993),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승환/신은영, (2011),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윤숙 외, (2023), 「2022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정진영, (2003),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문제의 검토', 교정연구 제20호, 한국교정학회.  
 주성빈/윤해성, (2022), '수형자의 능동적 사회복귀 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정책개발학회.

■ 외국문헌

Franklin E. Zimring & Gordon J. Hawkins, (1976), Deterrence :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ames A. Inciardi, (1999), 「Criminal Justice」, 6th Edition, Alabama Original Materials.  
 John Ortiz Smykla, (1985), 'Probation and Parole : Crime Control in Communi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Michael Tonry, (1979), 「Crime and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eter L. Nacci, Hough E. Teitelbaum, & Jerry Prather, (1977), 'Population Density and Inmate Misconduct Rates in Federal Prison System', Federal Probation.  
 大谷 實, (1987), 刑事政策講義, 成文堂.  
 山下邦也, (1993), 新・刑事政策, 日本評論社.

## 교도관이 천사라고?



현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하나씩 붙어서 지켜준다는 신앙이 천주교에는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눈먼 아버지 토빗을 대신해서 길을 떠나는 토비아 옆에 천사 라파엘이 함께 합니다. 라파엘은, 길을 모르는 토비아 곁에서 잘 이끌어 줍니다.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토빗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토비아의 아내와 토빗을 치유합니다. 라파엘이 이렇게 인도자, 치유자의 역할을 한 천사라면, 가브리엘은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 탄생을 즈카르야와 마리아에게 알리는 역할을 천사 가브리엘이 하지요. 천사라고 하면, 흔히 착한 모습만 떠올리는데, 싸움꾼 천사도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는 사탄과 싸웁니다. 전쟁에서 다른 천사들을 이끌고 악마와 싸우는 장면을 요한 묵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밖에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문지기 천사도 있고, 소동이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을 재촉하면서 구원하는 천사들도 나옵니다.



천사(天使)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사자라는 뜻이듯,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뜻합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인간에게 와, 길을 안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하느님의 뜻을 알립니다. 악마와 싸우기도 하고, 중요한 장소를 지키기도 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본성이 아니라 직무라는 말은, 자신이 맡은 그 직무에서 벗어난다면 더 이상 천사라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는 타락천사, 곧 악마일 것입니다. 천사와 악마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디 한 존재였는데, 천사 자신의 직무 왜곡 혹은 소홀이나 게으름으로 인해 악마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합니다.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다는 신자를 만났습니다. 구속되어 신입 조사를 받을 때, 천주교라고 답했더니, 조사를 맡은 교도관이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천주교 기도문을 쓰우 건네주더랍니다. 그게 너무나 큰 위로였다고 하더군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랍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에게 몇 번이고 강조하였습니다.

교정 사목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강당에서 대규모로 만날 뿐입니다. 종종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짧습니다.

반면에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을 참 밀접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호를 하면서 수용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계호가 길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도관(矯導官),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라파엘 천사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상처를 치유하였듯이, 교도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 어린 눈빛이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 응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분명 구치소의 여러 장치나 시스템으로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교도관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히려 더 살게 하는 의지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도관이 심리 상담 공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감감한 수용자들에게 더 전문적으로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제 더 이상 자신과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름없는 천사처럼, 외정문, 내정문을 지키는 교도관들도 있습니다. 낙담에 빠진 수용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민원과 업무를 하는 교도관들도 멸망 직전의 소돔 가운데 있는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는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악마와 싸우는 미카엘 천사가 중요한 것처럼, 기동대도 천사의 역할입니다.

1960년대 말, 사형 확정자들이 많던 시절, 사형 집행 전에 하느님이라도 알기를 바라면서 하느님 말씀을 절박하게 마치 가브리엘 천사처럼 전하던 교도관의 행동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종교 담당 교도관들이 그 역할을 하겠지요. 하지만 종교 담당 교도관들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천사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내실 것입니다.

아, 까먹지 않으셨죠? 사탄도 원래 천사였다는 것 말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소홀하거나, 아니면 그 직무를 자신의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교도관, 참 중요한 직무입니다.



# 징벌처분 유형별 행정심판 재결 동향

-2024년 서울지방법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중심으로



김소라

서울지방법교정청 보안과 교감

## 목차

- I. 서론
- II. 징벌대상 행위 유형별 재결례
- III. 맺음말

## I. 서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재송의 일종이다. 교정시설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근 상급행정기관인 각 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어,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의 장이 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등의 행정심판을 소속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징벌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 유형별로 최근에 있었던 서울지방법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II. 징벌대상 행위 유형별 재결례

### 1. 절도 방조 사건(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보관품 창고 작업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보관품 창고 작업자 A, B, C, D, E, F 총 7인은 같은 거실(가9동 1층 11호)에 수용되어 있었다.

2023. 10. 경 수용자 G가 피청구인 교정시설에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주류 2명이 보관품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보관품 창고 작업자들은 주류를 절취하여 수용거실에서 마시기로 공모하였고, 2023. 12. 22. 경 수용자 A와 B가 주도하여 해당 주류를 절도하여 수용거실로 반입하였다.

청구인은 반입된 주류를 마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주류의 절취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당 근무자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5. 17. 금치 21일의 처분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4. 8. 14. 이 사건 징벌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주도한 주류 절취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같은 거실에 있었을 뿐 절취한 주류를 마시지도 않는 등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다. 위원회의 판단

####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이 사건의 관련자인 A 내지 F의 진술조서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주류 절취에 대해 사전 공모하였다는 점이 일부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전 공모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류 절취의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근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타인 소유의 양주를 허가 없이 보관품 창고에서 빼내어 수용거실로 반입한 후 마신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주류의 절도행위 자체는 A와 B에 의해 실행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절취된 주류를 음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절도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하였다면 그러한 부작위에 의해서도 형법상 방조행위는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보관품창고의 작업자로서 타인의 보관품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자인데, A와 B가 보관품창고에서 타인의 주류를 절도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가 성립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규율위반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이 사건의 정범인 A와 B에게는 각 ‘금치 30일’과 ‘금치 25일’의 징벌이 부과되었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7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B의 주류 절취행위를 방조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A 또는 B와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고, 이 사건 징벌처분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21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2.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강제 사건(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7. 5. 22:00경 수용거실에서 수용자 A, B와 공모하여 같은 거실의 수용자 C에게 A가 복용하는 척하고 뱉어내어 몰래 보관하였던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을 강요하였고, C가 복용을 거부하자 청구인과 B는 C의 양 팔을 붙잡고 A는 C의 턱을 잡고 입을 강제로 벌린 후 의약품을 입 안에 넣어 삼키도록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1. 금치 30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30.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위원회의 판단

####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과 이 사건의 공범인 A와 B는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 및 참고인 D, E, F의 진술조서상 진술 내용의 일관성·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공범 A, B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양 팔을 붙잡아 신체를 제압한 후 입을 벌리게 하여 의약품을 억지로 삼키게 한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324조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하며, 청구인 및 A, B 총 3인이 다종의 위력으로서 위 행위를 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강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율위반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30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선동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징벌 집행 중이던 2024. 4. 24. 08:15경,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권리구제 서신과 관련하여 구매한 등기우표를 지급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운동 중이던 수용자들에게 “나 정도 되니까 징벌 중에 우표 구매하고 편지도 쓸 수 있는 거야. 직원들 고소고발하고 코걸고 괴롭히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근무자 괴롭혀서 편지 다 써”라고 말하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수용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5. 2. 금치 30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8.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수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다중을 선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수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다중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우표를 사려면 나처럼 근무자를 괴롭혀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목격자 B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다른 수용자들에게 늘 근무자를 고소고발하고 협박하여 괴롭힘으로써 우표구매 등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선동’이란 특정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을 가지고 문서 혹은 도면 또는 언동에 의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시킬 결의를 조장시킬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법전출판사, 「법률용어사전」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용자들에게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무자를 괴롭히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의 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우표 구매를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근무자를 괴롭히면 우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동을 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우표 구매를 위해 근무자에게 보고전·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조장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율위반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30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4. 음란행위 및 강제추행 등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

#####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3. 8. 13. 21:00경, 같은 달 15일 14:00경, 9. 19. 06:30경 세 차례에 걸쳐 같은 거실의 수용자 A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가슴을 왼손으로 치켜 올리면서 ‘살 좀 빼라’라고 말하였고, 장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배를 주무르고 귀를 만지면서 입으로 깨우는 방법으로 A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한 끝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 10. 19.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16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1. 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가 피해자 A와 평소 친한 사이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다. 위원회의 판단

######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스스로 ① A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살을 빼라고 하였고, ② 가슴을 왼손으로 치켜 올리면서 살 좀 빼라고 하였으며, ③ A를 꺼안고 귀를 만지면서 입으로 깨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어떠한 행위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 중 ‘A를 꺼안고 귀를 만지면서 입으로 깨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행위(옆구리를 잡고 흔들거나 가슴을 치켜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 A가 청구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바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에 따른 징벌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는 각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하여, 제215조 제2호에 따라 각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인 ‘10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최대 ‘30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16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5. 일과시간 취침 및 교도관의 직무방해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제17호)

#####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7. 24. 10:27경 및 14:05경 수용거실에서 일과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침을 하다가 담당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규율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를 각 1차례씩 2차례 발부받았고, 이틀 후인 7. 26. 14:10경 재차 수용거실에서 일과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누워 있다가 적발되어 세 번째 규율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15:30경에도 거실에서 누워 있다가 적발되어 담당 근무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 되자, 거실 복도에서 다른 거실로 이동하는 근무자를 향해 “왜 거실에서 눕는 것과 자는 것을 통제합니까,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라며 큰 소리로 외쳐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담당 근무자가 해당 사유는 면담 사유로서 부적절함을 교육하였음에도 재차 “접견 대기실에서 사탕 먹던 민원과 교도관을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2. 금치 24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9. 20.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는 허리 디스크 및 항문질환으로 인해 자세가 쓰러진 것일 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는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

한 문 의와 권 리 구 제 목 적 의 소 장 면 담 신 청 일 뿐 교 도 관 의 직 무 에 방 해 가 될 정 도 로 반 복 된 소 란 이 아 니 므 로 이 사 건 징 벌 처 분 은 위 법 · 부 당 하 여 취 소 되 어 야 한 다 는 취 지 로 주 장 하 였 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가) 일과시간 취침(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청구인은 허리 등 질환으로 인하여 자세가 쓰러졌던 것일 뿐이고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시로 하의탈의하고 누워서 잠도 잤습니다. 담당 근무자가 이에 대해 10회 이상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용복 하의를 탈의하고 거실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영당이 환부 때문에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누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 B의 자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담당근무자님이 지속적으로 누워있지 말라고 지시하셨으나 계속적으로 누워있었고..."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지시불이행에 따른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교도관 직무방해 관련

청구인은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문 의와 권 리 구 제 목 적 의 소 장 면 담 신 청 을 각 1 회 한 것 일 뿐 당 당 근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00%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웠고 근무자의 통제에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B의 자술서에 따르면 "면담 불가능한 사유들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팀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근무자가 알사탕을 섭취하며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며 부정부패로 고소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근무자님의 근무를 방해하였으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직무방해에 따른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가) 일과시간 취침(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근무자가 일과 시간에 누워있지 못하도록 한 지시는 엄정한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허리 질환 등 부득이한 사정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의무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점, 의무관의 명시적 지시 없이 근무자가 특정 수용자를 누워 있도록 허가할 경우 수용자 간의 차별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해 담당 근무자가 임의로 수용자가 누워있도록 허가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담당 근무자가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이 거듭 근무자의 지시에 불이행한 점을 고려시, 청구인의 허리 질환 주장은 근무자의 지시를 불이행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23. 7. 24. 10:27경 및 14:05경, 이틀 후인 7. 26. 14:10경 및 15:30경 무려 네 차례나 일과시간에 수용거실에서 누워 있었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교도관 직무방해 관련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미 다른 거실로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담당 근무자에게 "왜 거실에서 눕는 것과 자는 것을 통제합니까,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 "알사탕을 먹은 직원을 부정부패로 고소하겠다"라며 수 차례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근무자가 직무집행에 방해를 받았음은 넉넉히 추단된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소장 면담 신청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집행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에는 소장은 면담을 거부할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담당 근무관이 앞서 수 차례 일과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누워있을 수 없고 일과 시간에 눕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의무관의 별도 지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누워있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지시에 반하여 일과 시간에 누워 있는 것을 허가받기 위해 소장 면담을 요구한 것은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라고 외친 행위는 정당한 면담요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및 '9일 이하의 금치'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인 '10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26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24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6. 인원점검 방해 및 지시불이행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제17호)

###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8. 16. 14:30경 담당 근무자에게 자신의 코골이 문제로 거실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 근무자로부터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같은 날 16:35경 재차 거실 변경을 목적으로 인원 점검을 받던 과정에서 번호를 구령하지 않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계장님!”이라 소리치고, 다른 거실의 점검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인원 점검을 방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인원 점검이 종료된 직후 재차 비상벨을 눌러 근무자에게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하라는 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거실 출실을 반복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23. 금치 15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25.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① 조사수용 통지서에 ‘지시불이행’혐의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지시불이행’혐의로 징벌 의결된 것은 위법하며, ② ‘인원점검방해’도 같은 거실 수용자로부터 모욕, 협박, 강요당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도였을 뿐 인원 점검을 방해한 것이 아니며, ③ 자신의 행위는 순회점검 교도관에 대한 청원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위원회의 판단

####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에서 청구인 스스로 인원점검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근무자에게 호출통화장치 등을 눌러 재차 목적을 밝히지 않고 출실을 요구하며 “나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 가) 인원점검 방해 행위 관련

이 사건 인원점검 방해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거실 수용자 A로부터 “자다가 코를 골면 때리고 쳐서 깨울 수 있다”라는 협박을 받아 이를 신고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청구인에게 “코를 심하게 골면 깨울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청구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협박당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드시 인원 점검 시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인원점검 시간 도중에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담당 교도관은 인원 점검에 크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원점검 방해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에 따른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나) 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출벨을 눌러 직원을 재차 호출한 것은 순회점검 교도관에 대한 청원으로 정당한 청원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제8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교정시설을 순회점검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용자 처리지침」 제4조 제3항에서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 교정시설 순회점검 시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정시설의 소속 교도관으로서 수용동을 순찰하는 교도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수용동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에게 호출벨을 누른 행위는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 청구인은 담당 직원의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원점검이 끝난 후 재차 호출벨을 눌러 직원을 호출하여 호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실을 요구하며 “나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조사수용 통지서에 ‘지시불이행’혐의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지시불이행’혐의로 징벌 의결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10조 따르면 ‘조사수용’이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수용자를 본 거실에서 분리하여 다른 거실에 수용하는 절차로, ‘조사수용 통지서’는 이러한 절차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수용을 위해 조사수용 통지서상 임시 기재된 것에 불과한 혐의 내용에 징벌위원회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및 '9일 이하의 금치'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인 '7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17일 이상 22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15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 일과시간 탈의 등 지시불이행 사건(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가.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3. 12. 4. 10:00경 수용거실 내에서 일과시간 중 취침으로 인해 담당 근무자에게 1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았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수용복을 착용하지 않아 2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으며, 다음 날 8:00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 가방에 A4용지를 넣어 의자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3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았다.

이에 3차에 걸친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 12. 14.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13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2.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① 1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감기에 걸려 약을 먹은 후 어지러워서 잠시 누워 있었을 뿐이고, ② 2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저녁을 먹기 위해 관복을 탈의하였을 뿐이며, ③ 3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닐 가방에 책, A4용, 공책,

소송관련 서류 등이 들어있었을 뿐 의자를 불법으로 제작한 바 없으므로 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원회의 판단**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진술조서상 각 규율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피청구인은 각 규율위반행위를 평소 금지하는 지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각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① 각 규율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이 있었는지, ② 그러한 직무상 지시나 명령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③ 청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가) 일과시간에 누워있었던 행위**

- ① 형집행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따라야 하고, 일과시간 중 취침 금지 지시는 수용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수용생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다.
- ② 이러한 일과시간 중 취침 금지 지시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해당한다. 특히 일과시간 중 취침하게 될 경우 취침시간에는 수면에 들지 못하여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과시간 중 눕지 못하도록 하는 교도관의 지시는 정당하다.
- ③ 피청구인은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잠시 누워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1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나) 수용복 미착용 행위**

-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는 실내생활시 평상복을 착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주간에 임의 탈의 금지 지시는 수용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수용생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다.
- ② 만약 수용복을 탈의하고 생활하게 될 경우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미관상 불편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신 등을 내세워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복 미착용을 금지하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은 정당하다.
- ③ 청구인은 거실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거실 수용자 전체가 탈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저녁식사와 탈의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다) 비닐 가방으로 의자를 제작하여 그 위에 앉는 행위**

- ① 형집행법령 및 수용생활 안내문 등에 명시적으로 수용거실 내 물건을 쌓은 후 그 위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 차례 비닐 가방에 앉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도관은 구금시설이 가진 본래의 성격상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폭넓게 수용자들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0588 판결)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 ② 비닐 가방의 본래적 용도가 물건을 담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닐 가방에 책, A4용지, 공책 등을 담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라 볼 수 없다. 다만 교정시설 내 의자 등의 가구로 인한 금지물품 은닉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차단, 수면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교정시설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좌식 생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쌓아 그 위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 또는 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3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라.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III. 맺음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청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장점들을 악용하여 자신의 수용생활 편의 요구 또는 직원 괴롭히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최근 10년 간 300건에서 600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올해 들어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이례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1월 현재 900여 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각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최초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특히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접수건(2024. 11. 현재 540여 건)의 폭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540여 건의 행정심판청구 중 100여 건은 특정 수용자 1인이 청구한 것이며, 청구 내용은 대부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더불어 담당 직원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특정 소수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은 위원회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전체 심사업무의 지연을 낳고 있으며, 이는 권리구제가 필요한 다른 수용자들의 심사받을 권리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제32조의 2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고, ②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한해 있었던 행정심판 청구 건수의 증가 추이 및 특정 수용자의 제도 악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설된 제도들이 교정시설 내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용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함으로써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24시간 내내 접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행정심판과는 청구의 양상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서 이러한 특이성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교정시설 및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2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형집행법상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때이다.



법무부 장관, 부산(교)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11. 1.(금) 14:30, 부산(교)  
**방문자** 장관, 본부장, 대변인, 교정기획과장 등  
**주요 내용**  
 - 마약사범 재활 교육 운영 경과 및 실태점검  
 - 교도작업장 등 안전관리 현장 점검 등

'24년 10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개최



**일시·장소** 11. 25.(월) 11:20, 본부장실  
**대상자**  
 - (우수 수사관) 서울동부(구)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이석민  
 - (우수 정보관) 서울남부(구)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고정빈  
 ※ 격려금 및 증서 수여

제42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참석



**일시·장소** 11.16.(토)~11.22.(금), 홍콩  
**참석자** 본부장, 교정기획과장 등 13명  
**주요 내용**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정행정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일시·장소** 11. 29.(금) 14:00, 서울동부(구) 대회의실  
**참석자**  
 - (내부위원) 교정정책단장  
 - (외부위원) 위원장 임대기 등 9명  
**주요 내용** 시설 참관 및 회의 안건 토의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국가보훈부 주관, <유튜브 숏포러브>의 커피차 이벤트**  
서울지방교정청은 11월 20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또 하나의 국가대표 제복근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숏포러브>에 출연한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 교정민원콜센터 장민우 주임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커피차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해당 영상의 많은 시청을 격려했다.



#### 서울구치소 / 교위 임안섭

#####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현장방문

서울구치소는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서울구치소 업무현황 소개와 참관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관 후에는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가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안양교도소 / 교도 현민준

##### 동안양세무서 대상 참관 실시

안양교도소는 10월 11일 동안양세무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 참관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보호장비 체험을 하는 등 색다른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 20년째 이어온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수원구치소는 11월 18일부터 3일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수원구치소 교정협의회 김민주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룸비니 쉼터에서 진행되었다. 직원 및 교정위원들이 직접 김장을 했으며, 수용자 가족 79가구에 각각 15kg씩 전달했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 제2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11월 2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유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10명의 내·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수용자의 효과적 인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주제로 현안 발의 및 토의를 가졌다.



####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 인천미추홀소방서 소방시설 확인 및 통합 대응 체계 확립

인천미추홀소방서 소속 직원 20명이 11월 20일 인천구치소를 방문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소내 부의 소방시설, 대피 시설, 대피 장소 및 종합통제실을 확인했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조영진

##### 모범 수형자 봉사활동 실시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는 10월 17일 모범 수형자들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인 '오류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봉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배수구 청소, 외부 시설 정비, 잡초 제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홍민우

#####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하여 화성시 남양소방서(남양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상황에 대한 기관 자위소방대의 대처능력과 소방서와의 협조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참관

의정부지검 단성한 고양지청장이 11월 5일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의정부교도소 구내 시설을 참관하고 기동순찰팀의 체포 진압술 시연 등을 관람했다. 또한 참관을 통하여 대책 마련 및 향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여주교도소는 11월 14일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4년도 상·하반기 취창업지원 주요 추진 실적 등을 보고하고, 2025년 사업 활성화와 허그일자리지원 사업 강화, 2025년 교정작품 전시회 시행기관 등을 주제로 토의하였다.



####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 청소년 직업체험 실시

춘천교도소는 11월 6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흥천지구위원회와 흥천중학교 학생 5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청소년들에게 춘천교도소와 교정직 공무원의 업무를 소개하는 진로체험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 원주소방서 참관

원주교도소는 11월 26일 원주소방서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원주교도소 홍보영상 시청, 전자경비시스템 소개 등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구내 참관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수용자들의 생활공간을 확인함으로써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강원영동병무지청 참관 행사

강릉교도소는 11월 7일 강원영동병무지청 직원들을 초청하여 교정시설을 참관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강원영동병무지청 직원들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 거실을 둘러보고, 교정 시설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주한 미국 대사관 대상 참관 실시

영월교도소는 11월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 환경 등 처우에 대한 실태확인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관자들은 교육센터장 등을 견학하였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카타르 내무부 대표단 참관 행사

강원북부교도소에 11월 22일 카타르 내무부 대표단 등 15명이 방문하여 참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카타르 내무부 대표단은 교정시설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중앙통제실, 희망광장, 자치수용동, 접견실 등을 참관했다.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합동 소방훈련 실시

평택지소는 11월 1일 청사내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관내 소방서인 세교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위소방대 편성과 행동 요령을 익히고, 화재진압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화재 시 대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1박 2일 가족 사랑 캠프 시행

소망교도소는 11월 12일부터 1박 2일 동안 수형자들의 부모님을 초청해 2024년 '제3회 소망 가족 사랑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수형자와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고위직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대구지방교정청은 11월 11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포함)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능력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안전한 직장 환경을 만들며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참관 실시

대구교도소는 11월 14일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의 전공 지식 및 직업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11월 15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의 적극적인 헌혈 행사 참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무연고 위령 미사 실시

천주교안동교구 교정시목은 11월 6일 경북북부교정기관 무연고자 묘지를 방문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며 세상을 떠난 무연고 수용자 영혼이 안식을 얻길 기도했다. 무연고 묘지는 경북북부교정기관에서 사망한 수용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교도소 부지 내에 묘역을 만들어 매장하면서 조성하게 되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청렴 캠페인 및 환경미화 행사 실시

창원교도소는 11월 1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및 민원인주차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 등 20명은 청렴 슬로건 어깨띠를 착용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청렴 인식이 전해지도록 노력하였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는 11월 13일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김정수 교수 등 33명을 초청하여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자들은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되고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교정시설 참관

포항교도소는 11월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지원장 등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헌혈 소개, 교정 홍보영상 시청, 시설 참관 및 오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의무교도대원 체육대회

진주교도소는 11월 4일 의무교도대원 체육대회를 통해 대원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족구, 피구,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소통이 적었던 대원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대구구치소 / 교사곽재원

어울림 한마당 개최

대구구치소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장기자랑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어울림 한마당은 직원뿐만 아니라 의무교도대원들도 함께 참여해 숨겨왔던 본인의 장기를 선보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관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0명은 11월 7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참관하여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관단은 합동청사 옥상에서 교도소 전체를 둘러본 후 직업훈련공관, 종교교관, 문화복지관 등 구내·외 시설을 참관했다.



###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안동교도소는 11월 13일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민간 자원봉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의견 수렴과, 교화 활동 역량 제고 등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 소방 훈련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1월 14일 소방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영성 소장은 이날 훈련이 끝나고 "오늘 훈련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화재를 비롯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 소년수형자 4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4명이 응시하였다. 이날 시험은 김천소년교도소 내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행되었으며, 김천교육지원청과 울곡·성의고등학교 시험감독관, 김천소년교도소 보안요원의 감독하에 시행되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 부서별 체육행사 사진 콘테스트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부서별 자체 체육 행사 및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서별 체육행사 시 촬영한 단체 사진 우수 부서를 선정 후 포상하였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11월 1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후원 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선영

####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11월 6일 출소를 앞둔 구직 수형자와 구인 기업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2024년 출소 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자 1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채용면접을 실시, 6명의 취업을 약속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실시

통영구치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준법 교육, 성·인권 교육 및 악기(오카리나) 체험, 종이접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 교정협의회 작품 전시회 개최

밀양구치소는 11월 1일 작가 윤필 이종재 님의 협조를 받아, 제1회 교정협의회 작품 전시회 '인연'을 개최했다. 작가의 시와 그림을 통해서 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였으며,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은 불우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 소란·난동 진압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11월 21일 수용자 소란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임무별 행동 절차와 대응 매뉴얼 등을 숙지하였고, 인권보호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채증장비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거창구치소는 11월 15일 청년인턴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수료식은 감사패 전달,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마쳤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11월 9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천양원(보육시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 대전고등법원 양형실무연구회 판사들 참관 행사

대전교도소는 11월 4일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진한 등 23명을 대상으로 소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관을 통해 대전고등법원 양형실무연구회 회원들에게 교정행정을 소개하고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 청주교도소 / 교사 신동우

**'새 희망 김장 나눔 행사' 통해 지역 사회에 사랑 나누**  
청주교도소는 11월 18일 교도소 내에서 '새 희망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수형자들은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 미혼모의 집 등 사회배려계층에 김치를 기부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신규직원 임용 및 전입 직원 환영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11월 4일 신규직원 임용 및 전입 직원 환영식을 진행하였다. 신규임용 직원들은 앞으로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사명을 다하도록 공무원 선서를 하였으며, 선배들은 신규임용 및 전입직원을 축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취업지원 협의회 정기회의**  
청주여자교도소는 11월 21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취업지원 협의회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공주 공산성로타리 클럽 교정시설 참관**  
공주교도소는 11월 13일 지역사회 봉사클럽인 공산성로타리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공산성로타리클럽은 그간 흡서기 수용자 아이스크림 후원을 하는 등 교정교화에 이바지한 바있다.



###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충주구치소는 11월 21일 '2024년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대현하이텍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출소예정자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는 11월 18일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참여업체와 수형자 간 1:1 채용면접, 취업·창업 지원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11월 21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되었다.



###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개최**  
서산지소는 11월 13일 취업지원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에는 수용자 취업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직원 사격훈련 실시**  
논산지소는 11월 7일 2024년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육군 3585부대 1대대의 협조를 받아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루어졌고 논산지소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 훈련 결과, 사격 우수 직원으로 1위 교도 정완규, 2위 교도 이윤상, 3위 교도 김미연(女) 3명이 선정되었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11월 20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PC 등의 보안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법무보호의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기부식**  
광주교도소는 11월 14일 법무보호의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로부터 돼지고기 400kg, 소고기 50kg을 기부받았다. 김도형 소장은 "이번 기부가 수용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교정교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전북개발공사 참관 실시

전주교도소는 11월 5일 전북개발공사 소속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전북개발공사 직원들은 이날 참관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김성동 순천지청장 초청 직원 대상 특강

순천교도소는 11월 11일 김성동 순천지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의 가치관 정립'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성동 순천지청장은 교정행정의 사회적, 국가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신원목 마을 주민 참관 행사

목포교도소는 11월 21일 관내 신원목 마을 주민 1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은 용접훈련장, 농기계정비 훈련장, 자치수용동, 가족접견실 등을 참관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가졌다.

군산교도소 / 교도 이주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11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제주교도소는 11월 20일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실시하여 혈액 수급 안정화에 적극 동참하는 등 봉사 정신을 실천하였다. 이번 헌혈은 동절기 혈액 보유량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에 응급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그 의미가 더 깊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마약수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장흥교도소는 11월 19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직원들과 마약수사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마약거래 및 외국인 마약범죄 등 마약류범죄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해남군 주관,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해남교도소는 11월 22일, 해남군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기부 시 답례품을 증정하며 많은 직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사격훈련 실시

정읍교도소는 11월 20일 육군 제8098부대(105연대) 3대대 실외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했으며, 사격 실시 전 사격 방법과 안전 수칙, 총기 조작, 미작동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모범 공무원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이재화

이재화 교위는 2000년 영등포교도소(현, 서울남부교도소)에 임용되어 25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2015년부터 봉사동아리 천사회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 이호진

이호진 교도는 현재 보안과 접견팀에서 수용자의 외부통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보안과 변호인 접견 근무를 명 받아 근무하던 중, 민원인이 접견실 내로 휴대 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을 포착하여 즉시 중지시키는 등 민원인 불법 촬영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청주교도소 교위 류태주

류태주 교위는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 시행기관인 청주교도소 직원훈련과 소속 직원으로서 주최기관인 대전지방교정청 수립 계획에 따라 전시회 홍보, 출판작 관리 및 배치, 방문객 안내, 개관식 준비 등을 철저히 진행했다. 이에 10월 25일 열린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제주교도소 교사 정상호

정상호 교사는 총무과 자비구매업무 담당자로,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필요 물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수용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있으며, 민원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 숨은 그림 찾기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 사슴
- 당근
- 곰인형
- 종
- 아이스크림
- 커피잔
- 가로등
- 선물상자
- 지팡이
- 눈결정체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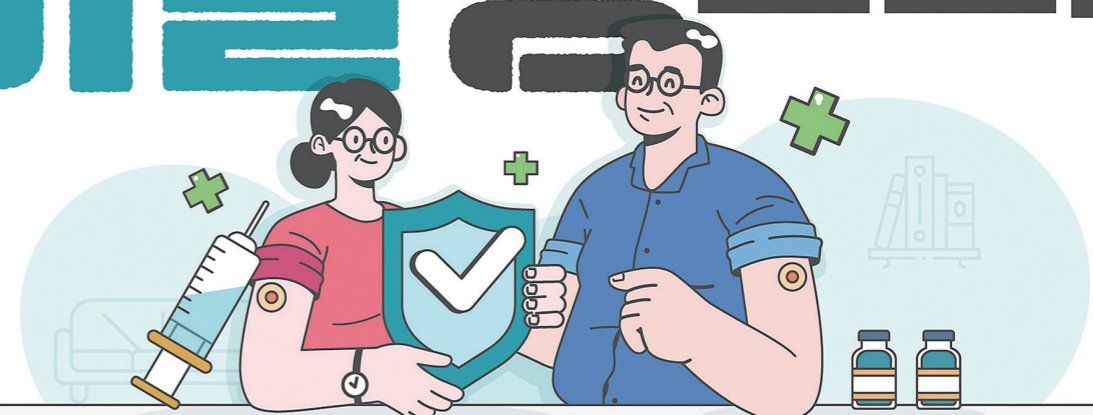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5천 원권 발송

## 65세 이상 어르신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하고

# 질병을 이길 병으로!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1959.12.31. 이전 출생자)
-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지원기간**
  - 75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자) | 2024.10.11.(금) ~ 2025.4.30.(수)
  - 70~74세 (1950.1.1.~1954.12.31. 출생자) | 2024.10.15.(화) ~ 2025.4.30.(수)
  - 65~69세 (1955.1.1.~1959.12.31. 출생자) | 2024.10.18.(금) ~ 2025.4.30.(수)

- 1.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2.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3.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4.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5.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